

M45-35 / 2003. 7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35호 (2003년 7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목 차

I. 농업 농정 동향

1. GMO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분쟁 3
2. 미국, EU의 GMO 규제를 WTO 제소 6
3. 미국과 EU간 GMO 분쟁의 경과와 전망 10
4. EU, GMO에 관한 새로운 입법 추진 21
5. EU, 공동농업정책 개혁 합의 28
6.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주요내용 32
7. 중국, GMO 무역에 대한 규제 동향 42
8. 중국, 농촌정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49
9. 중국, 무공해농산물 인증 실시 58
10. 일본, 고급품 중심의 쌀수출 급증 60
11. 아르헨티나, 2003년도 농산물생산 전망 62
12. 베트남, 농업생산과 농업구조 개황 66


II. 국제기구 논의동향

- 최근 WTO/DDA 농업협상 동향 75

III. 세계 식료수급 정보

-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7) 89

IV. 통계자료 103



농업 농정 동향

GMO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분쟁
미국, EU의 GMO 규제를 WTO 제소
미국과 EU간 GMO 분쟁의 경과와 전망
EU, GMO에 관한 새로운 입법 추진
EU, 공동농업정책 개혁 합의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주요내용
중국, GMO 무역에 대한 규제 동향
중국, 농촌정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중국, 무공해농산물 인증 실시
일본, 고급품 중심의 쌀수출 급증
아르헨티나, 2003년도 농산물생산 전망
베트남, 농업생산과 농업구조 개황

GMO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분쟁

미국 정부는 5월 13일 EU가 강구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신규개발 동결과 지속적인 수입규제 행위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EU는 1992년부터 GM 작물과 식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 옥수수를 비롯하여 18종을 인가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로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1998년 이후 GM 작물에 대한 신규 인가를 동결하고 수입 규제를 단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표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준비해왔다.

1. EU, GM 작물의 안전성에 의문

EU는 2002년 11월 GM 혼합률이 0.9%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확정하고, GM 식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추적가능성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가맹국간의 인식차이로 신규개발 동결을 계속하는 국가가 있는 한편, 새로운 제도도입을 주장하는 국가도 있는 등 제도개선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에 미국의 철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GM 식품은 친환경적이고 생산력도 높다고 반박하면서, “EU가 현재 규제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을 뿐아니라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지난 5년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지만 이대로는 세계의 농가나 소비자에게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여, WTO 규정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농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GM 작물의 식부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있었다. 2003년도 작물별 식부면적에 차지하는 GM 작물의 비율을 보면, 대두는 80%, 옥수수는 38%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EU의 규제에 의하여 미국 농가가 입는 손실은 옥수수의 수출감소만으로도 연간 3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제소를 요구해 왔다.

2. 미국 · EU 간의 농산물무역 분쟁격화

미국과 EU간에는 그동안 바나나분쟁, 호르몬쇠고기분쟁, 수출촉진세분쟁, 그리고 이번의 GM 분쟁 등 분쟁이 분쟁을 낳는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EU의 바나나 수입할당제에 대해 미국은 WTO에 제소, 1998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EU는 제도개선을 하였지만 불충분하여 1999년 미국은 1억 9,1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끝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합의한 바 있다.

또, EU가 성장촉진용 호르몬을 사용한 쇠고기에 대하여 안전성을 문제로 수입을 금지하자 이를 미국이 WTO에 제소, 1999년 EU가 패소한 것이 호르몬쇠고기분쟁이다. EU는 판결 결과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미국의 보복조치를 받았다.

한편, 부시정권 발족이후 미국이 WTO에 제소 당한 것만해도 29건에 달하나 제소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최근 미국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외 판매법인에 대한 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제도에 대해 EU가 WTO에 제소하여 미국이 패배한 바 있다. 이것이 수출촉진세분쟁이다.

EU가 금년 가을까지 관련제도를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상 최대 금액인 연간 4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한 것이 5월 7일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6일 만인 5월 13일 GMO 제소로 맞대응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3.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논쟁 가열

이와 같은 양자간의 분쟁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DDA 농업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WTO 탈퇴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FTA를 가속화하여 시장확보를 노리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호주를 비롯하여 칠레, 싱가포르, 한국, 중동지역 등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고착과 시장쟁탈 격화 등이라는 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GMO 규제에 대한 WTO 제소에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도 동조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향후 GMO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 확립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GM 식품은 과연 안전한가,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식품안전성이나 환경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과 자유무역간에는 어떠한 대립관계가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미국, EU의 GMO 규제를 WTO 제소

미국 무역대표부(USTR) 쥘릭(Zoellick)과 농업부 장관 베니만(Veneman)은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집트 등이 생명공학 농산물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한 유럽연합(EU)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지난 5월 13일 발표하였다. 또한 제3자로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국가로는 호주,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우루과이 등이 있다.

이번 발표에서 쥘릭은 “EU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전 세계 국민이 수년동안 생명공학 식품을 먹어왔다. 생명공학 식품은 기근에 시달리는 전세계 국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건강과 영양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토양침식과 농약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학에 기반을 둔 안전성 분석결과를 존중하기 위해서 EU가 WTO 규정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시하며, 인내력을 갖고 5년 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WTO 책임과 의무에 대한 EU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EC의 과학적 분석에 의한 부당한 무역장벽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소비자나 농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베니만은 “우리는 미국 농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이는 다자간 협상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EU는 WTO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은 농민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농약사용을 줄이고, 토양보전 및 수진오염을 개선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기근과 빈곤을 퇴치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농민들이 단순히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게 배척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U 조치는 전세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엄청난 잠재력과 혜택을 제공하고, 수천 수백만의 개도국 국민들이 기근과 영양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EU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런 관계속에 이번 소송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쟁과도 관여하고 있다. 미국은 적절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EU와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도하(Doha) 무역협정에서 상호 공동목표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에 관한 WTO 협정은 각국이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물과 식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WTO SPS 협정은 회원국들이 이런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불공정한 유예(undue delay)”없이 자신의 승인절차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가 있는 농산물 교역을 저해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부당하게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을 배재할 수 없다.

1999년 이전 EU는 재배 및 수입용으로 9가지 생명공학 농산물을 승인한 바 있다. 그 이후 모든 신규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으며, 이번 신규 승인에 대한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2000년 7월, EU 환경 집행위원장(Environment Commissioner)인 모가트 월스툼(Margot Wallstrom)은 “우리는 집행시기를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켜 왔고, 모라토리움은 적법하지 못하며, 정당화시킬 수 없다. EU는 생명공학기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농업생명공학기술은 지난 수천년 동안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농업기술혁신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과학을 이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및 질과 영농방식을 개선하면서 진보해 왔다.

2002년 전 세계 생명공학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1억 4,500만 에이커(5,800만 ha)로 증대해 왔다. 전 세계 대두의 45%, 옥수수의 11%, 면화의 20%, 유채의 11%가 생명공학 농산물이다. 미국에서 생명공학 농산물의 비중은 대두가 75%, 옥수수가 35%, 면화가 71%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나 과학자들은 생명공학 식품이 인체나 환경에 무해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프랑스 의료 및 의약품협회(French Academy of Medicine and Pharmacy), 프랑스 과학협회(French Academy of Sciences), 미국·브라질·중국·인도·멕시코 국립과학협회(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및 런던 왕립협회(Royal Society of London)와 제3세계 과학협회 등 7개 국립과학협회에서 수행된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다수의 과학연구와 생명공학식품 선언을 공동 후원한 3,200여명의 과학자들 또한 동일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98년 10월 EU는 재배 및 수입용도의 생명공학에 의한 새로운 농산물 승인을 중단한 바 있다. 이런 모라토리움은 회원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대두, 옥수수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농산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EU가 승인절차를 금지함에 따라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어떠한 농산물도 승인요청이 채택된 바가 없다.

1990년대 말 이후 EU는 농업분야 생명공학기술과 생명공학식품 교역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및 룩셈부르크 등 6개 회원국들은 EU에서 승인한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해 금지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거부했다. 이러한 승인 유예조치가 취해짐에 따라서 EU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던 미국 농산물 수출은 위축되었고, 전 세계, 특히 개도국에서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농산물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출했다.

미국과 일부 동조 국가들이 취한 WTO 분쟁 절차의 첫 단계는 향후 60일 이후에 협의과정을 요청하여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WTO 절차는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견해차이를 좁히도록 고안되었다.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어떤 해결책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미국과 동조 국가들은 각자의 주장을 경청하도록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을 위한 패널을 구성해야 하며, 상소를 포함한 분쟁해결 절차는 18개월이 소요된다.

자료: USDA, News Release No. 0156.03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미국과 EU간 GMO 분쟁의 경과와 전망

1. 미국의 EU 제소

지난 5월 23일에 미국은 유럽연합(EU)이 WTO 무역규범에 어긋나게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WTO에 정식 제소했다. 1998년 이후에 EU가 새로운 GMO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사실상 수입승인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통해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의 WTO 제소에 동참한 국가들은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및 제3자(third party)로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칠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모두 13개국이다. 미국이 이번에 제소한 분야는 새로운 GMO에 대한 수입 승인에 국한된다. 곧 EU의 GMO 추적(traceability) 및 표시제는 제소 대상에서 빠졌다.

2. EU의 GMO 승인제도

GMO에 대한 EU의 법 체제는 1990년대 초부터 운용되고 있다. 1990년 이사회 규정(Council Directive 90/220/EEC)은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GMO의 환경방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 16조는 승인된 GMO라도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이 GMO의 방출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

용했다. 2001년 3월에 이 규정은 새롭게 개정돼(2001/18/EC) 2002년 10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GMO를 시장에 유통하거나 환경에 방출하려고 신청하는 자는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GMO의 장기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부(-)의 효과를 밝히고 검토한 위해성 평가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된 2001년 규정이 이전 규정과 다른 점은 GMO 위해성 평가 및 방출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과, 다른 GMO나 환경과 연계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의무적으로 관측하도록 한 것이다.

GMO 방출에 관한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GMO가 처음 방출되는 지역의 해당 회원국이 위해성을 평가한다. 그 후에 이 GMO가 승인되고 유럽 집행위원회를 거쳐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 이는 EU 모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 만약 회원국의 반대가 제기될 때에는 작물 또는 식품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s)의 위해성 평가를 기초로 EU 차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은 10년 동안으로 한정되며, 그 이후에 갱신될 수 있다.

새로운 식품과 식품성분에 관한 1997년 규정(Regulation (EC) 258/97)은 앞에서 다룬 환경 방출을 위한 GMO의 경우와 비슷한 승인 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GMO에서 유도됐으나 식품의 구성, 영양 가치, 물질대사, 사용목적, 불필요한 물질의 수준 측면에서 기존의 식품과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지니면서도 해당 GMO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승인 절차가 생략된다. 이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과학적인 정당성을 첨부해 집행위원회에 통고하기만 하면 된다.

GMO 승인과 관련해 집행위는 2001년 7월에 GM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과 GMO 추적 및 표시제에 관한 규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

방출용 GMO와 GM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승인 절차는 단순하게 변경된다. 곧 유럽식품청(European Food Authority)이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면 집행위원회가 승인 여부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이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ttee)에서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제시된다. 반면에 실제로 동등한 GMO 식품에 적용되던 단순화된 절차는 없앤다고 제안됐다.

새로운 식품에 관한 1997년 규정이 발효되면서 GMO를 포함한 식품 및 종자에 대한 의무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GMO에서 유도됐으나 더 이상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 1월에는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첨가물과 조미료에 대한 표시제가 도입됐다(Regulation (EC) 50/2000). 또한 GMO의 비의도적 함량에 대한 허용 기준으로 1%가 제시됨으로써 그 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표시에서 제외된다(Regulation (EC) 49/2000).

2001년 규정은 이미 추적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2001년 7월에 제안된 규정은 이를 더욱 자세히 명시한다. 2001년 규정은 시장의 모든 단계에서 GMO의 고유 코드 등 GMO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및 보관하도록 정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GM 성분의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의 표시제를 모든 GM 식품과 사료로 확대하는 제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GMO가 함유된 포장제품에는 ‘GMO 포함(containing GMOs)’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벌크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관련 정보가 첨부되어야 한다. GM 성분의 비의도적 함유량에 대한 표시 기준은 1%로 같되, 승인되지 않은 GMO의 경우에 관련 과학위원회나 유럽식품청으로부터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국한된다.

이처럼 제안된 규정들은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002년 7월에 GM 성분의 함유량 기준을 0.5%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2002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농업 이사회와 환경 이사회도 이 기준을 채택했다. 또한 유럽 각료들은 0.9% 이하를 함유한 GMO는 표시의무에서 면제하도록 합

의했다. 유럽의회는 2번의 투표를 남겨놓고 있으며, 2003년까지 이 규정들을 법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90년 규정이 발효된 이후 2002년까지 18개 GMO에 대한 상업적인 환경 방출이 EU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GMO 및 그 파생제품의 추적 및 표시제 규정의 채택이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새로운 GMO의 승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도 예방원칙아래 새로운 GMO가 환경과 건강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검증되지 않는 한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모라토리엄 아래 1998년 이후 새로 승인된 GMO는 없으며, 현재 12개 GMO가 승인 신청을 출원해 놓은 상태이다. GM 식품으로선 GM 콩과 GM 옥수수 각각 1종이 1990년 규정에 따라 승인됐으며, 새로운 식품에 관한 1997년 규정에 따라 승인된 식품은 아직 없고 11종이 승인 출원을 해 놓고 있다.

3. 미국의 제소 이유

GMO 승인제도와 연계해 미국이 EU를 WTO에 제소한 가장 큰 이유는 그로 인한 경제 손실에 근거한다. 미국이 생산하는 옥수수의 35% 정도는 GMO이며, 생산량의 2% 미만이 구분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옥수수의 대부분이 GMO를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1997년 이래 EU는 옥수수 수입선을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전환하고 있다. 일부 미국산 GM 옥수수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EU가 승인한 GM 옥수수 품종을 재배해 수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5~2002년에 EU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333만 톤에서 3만 톤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에서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량은 53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늘어났다.

표 1 EU의 옥수수 주요 수입선 및 수입량

단위: 톤

	아르헨티나	미국
1995	528,028	3,325,082
1996	584,453	2,045,317
1997	918,790	1,708,445
1998	1,433,829	237,567
1999	2,031,431	30,359
2000	2,238,814	52,635
2001	1,357,138	32,018
2002	1,347,595	25,934

자료: European Commission

표 2 EU의 콩 주요 수입선 및 수입량

단위: 톤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1995	2,081,522	9,811,570	3,073,057
1996	1,288,060	8,571,884	3,121,094
1997	350,494	7,843,877	4,637,269
1998	1,064,751	6,691,269	5,439,613
1999	960,502	6,471,928	6,105,756
2000	381,482	6,908,250	6,372,400
2001	670,486	6,474,057	9,729,136
2002	1,163,840	5,518,096	8,933,295

자료: European Commission

같은 기간에 EU의 미국산 콩 수입량도 981만 톤에서 552만 톤으로 줄었다. EU의 콩 수입선이 미국에서 브라질로 전환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산 콩 수입량의 급감 원인은 옥수수의 경우와 다르다. 미국이 생산하는 GM 콩은 거의가 EU가 승인한 품종이기 때문에, EU 시장에서 점유율 감소는 접근성보다는 국제경쟁력 감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EU의 GM 식품에 대한 정책에 의해 연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농민들이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GM 농산물의 판매량 감소가 그 주된 원인이다.

EU의 GMO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번 WTO 제소에는 미국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미국의 무역 분쟁은 계속돼 왔으나, 최근에 이와 관련된 WTO의 판정은 두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2003년 5월 7일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수출기업(FSC) 조치(수출기업에 대한 조세 환급제도)가 불법적인 수출보조라고 판정하고, EU로 하여금 미국에 대해 100%까지 관세 증대를 통해 총 4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판정 이후 1주일 만에 미국이 GMO 제소 건을 들고 나온 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다른 미국의 관심사항은 EU의 정책이 개도국 등 제3국에 미치는 부의 파급영향이다. 예를 들면, 우간다는 EU 시장에 대한 수출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병 저항성 GM 바나나의 재배를 거부했다. 잠비아도 미국산 GM 옥수수의 안전성 문제와 EU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을 우려해 2002년 10월에 미국의 식량 원조를 거부했다.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은 지난 10년여 동안 GM 쌀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으나, 영국에 대한 쌀 수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GM 쌀 개발 작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이처럼 GM 농산물에 대해 일부 개도국들이 나타내는 우려와 거부 반응은 전적으로 EU의 수입제한 정책에 기인한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특히 EU가 무역특혜협정을 맺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국, 환태평양 국가들(ACP)은 자국에서 GM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EU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GM 농산물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 WTO의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제소국에 의한 협의 요청이다. 피제소국은 1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응답하고, 두 당사국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30일 안에 협의에 착수한다. 협의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목적을 둔다.

만약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안에 분쟁을 해소하지 못할 때에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가 패널을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패널이 위임되면 제소국은 3~6주안에 첫 번째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제소국은 2~3주안에 답변서를 제시하게 된다.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친 구두 심리와 두 번째 서면 의견서가 제출되게 된다. 이와 같은 패널의 절차는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패널 보고서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될 수 있으며, 상소 절차는 모두 90일 안에 끝나게 된다.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에 따라 당사국은 보통 6~15개월 안에 이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기간에 이행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WTO 규정에 따라 몇 개월의 조정 기간을 추가로 받게 된다. 조정 기간 이후에도 당사국이 최종 판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5. WTO 규정 측면에서 주요 쟁점

미국의 제소와 관련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EU가 GMO 승인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EU는 EU 차원에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곧 EU 차

원에서 합의한 2002년 규정(2001/18/EC)에 따라 EU는 사실상 1998년 이래 지속된 모라토리엄을 해제했으나, 8개 EU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자국 영토에서 주도적으로 GM 농산물의 수입과 사용 및 상업적인 생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EU는 이미 18개 GMO를 승인했으며, 현재 다른 승인출원 중인 여러 GMO도 최종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개월 안에 승인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유럽의회에 넘겨져 있는 GMO 추적 및 표시제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구매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EU의 GMO 규정들이 건전한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는 WTO 규범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GMO 수입과 관련된 WTO 규정은 SPS 협정, TBT 협정, GATT 협정 등이다. SPS 협정은 국제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사항에 따라 동식물 및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되(3조 1항), 국제기준이 없거나 회원국이 국제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SPS 조치를 채택할 경우엔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도록 정하고 있다(3조 3항; 5조 1항~3항). 만약 과학적인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 정보를 강구하면서 일정기간 잠정적인 SPS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나(5조 7항), 이 조치가 적절한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보다 더 무역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5조 6항).

GMO 관련된 조치에 적용될 SPS 규정은 ① 독성 물질과 관련된 규정, ② 식품안전이나 해충에 의한 위해성과 관련된 것으로 항생물질 저항성 마커(marker) 유전자의 사용에서 비롯된 위험, ③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 잡초가 되거나, 그 저항성이 야생종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해충에 의한 위해성을 다룰 목적으로 채택한 환경관련 조치 등이다.

TBT 협정은 의무적인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과 자발적인 기준(standards)에 관련된 제품 요건과 평가 절차의 검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SPS 협정에 준하는 엄격한 과학적인 기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TBT 협정은 합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목적으로 국가안보 요건, 사기행위의 방지, 사람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이 정의된다(2조 2항). EU는 표시제가 소비자 정보에 관한 조치이며 합법적인 목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이다. TBT 협정은 동종(like) 제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종에 대한 정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2조 1항).

GMO 관련된 조치로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① 식품안전과 연계되지 않은 GM 식품의 영양가치 변화와 관련된 조치, ② 식품안전이나 해충에 의한 위해성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항생물질 저항성 마커(marker) 유전자의 사용에서 오는 위해성 ③ 목표 대상이 아닌 종에 대한 해충 저항성 GM 작물의 부(-)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써 해충과 관련되지 않은 환경 관심사항 등이다.

끝으로, GATT 협정은 공공의 윤리 및 사람이나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고갈되는 천연자원의 보전을 위해 예외적인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XX조 (a), (b), (g)). 국내 규정이 WTO 규범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분쟁에 대해 SPS 협정, TBT 협정, GATT 협정의 순서로 적용된다. 이번 EU의 GMO 규정과 관련된 제소 사건은 주로 SPS 협정의 틀 안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GM 식품의 건강과 관련된 관심사항은 항생물질 저항성을 지닌 마커 유전자의 사용, 식품의 알레르기와 독성의 증가, 유전자 변형에 따른 부작용, 영양가치의 변화 등이다. 현재까지 GM 식품의 섭취에 따른 위해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무역조치의 정

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전자 변형 기술이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예방원칙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시행한다는 주장은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과 관련해 제초제 저항성 작물의 잡초화, 그 유전자의 야생종으로 전이 등의 부(-)의 영향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면서, GMO의 환경영향이 국제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복잡한 생태계의 특성으로 GMO의 환경영향은 공간 및 시간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례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한 무역조치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도 GMO 규제와 관련한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SPS 협정 5조 7항은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이 예방적인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을 근거로 GMO에 대한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을 옹호하려면, EU는 이 조항이 명시한 대로 ‘적절한 기간 안(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에 더욱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EU의 모라토리엄은 개정된 규정(Directive 90/220/EEC)이 발효되는 2002년 10월까지만 유지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이 추적 및 표시제 요건이 발효될 때까지 GMO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제조자 책임법(liability)이 최종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원국도 있는 실정이다.

6. 전망

만약 이번 미국의 제소가 WTO 패널의 결정까지 진행된다면, 앞에서 지

적했듯이, EU의 조치가 과연 모라토리엄인지, 그리고 이것이 SPS 협정 제 5조 7항이 규정하는 잠정적인 예방조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EU에서 지난 5년 이상 수입 승인이 미뤄진 것이 과연 SPS 협정이 명시한 ‘적절한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관련 규정의 발전과 회원국들의 입장, GMO와 관련된 국제법 규정의 부재 또는 모호함, WTO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문제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상태에서 WTO 패널이 어떤 판정을 내릴 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이 GMO에 대한 EU 소비자들의 강한 반감을 잘 알면서도, 그래서 승소하더라도 시장에서 실익이 적을 것이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제소를 추진했고, 또한 제소 대상을 추적이나 표시제가 아닌 수입 승인 부분에 한정된 점에서 승소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과 함께 그 고충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WTO 규정 및 다른 국제법의 예방원칙에 기대서 미국의 제소에 대응해야 하는 EU의 입장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소고기 호르몬 제소사건과 달리 GMO에 대한 예방원칙 적용이 영구적이지 않고 잠정적이란 점에서 EU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된다.

어쨌든, 지금까지 설왕설래 하던 일이 이제 주사위처럼 던져졌다. EU와 미국 사이의 GMO 분쟁 결과는 GMO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심사 체계를 세우면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임송수 songsoo@krei.re.kr 02-3299-4382 농정연구센터)

EU, GMO에 관한 새로운 입법 추진

유럽연합 의회(EU Parliament)는 7월 2일 GMO를 표시하고 추적하며, GMO로부터 파생되는 식품 및 사료를 표시하고 시장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EU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개의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새로운 법규 제정을 계기로 EU는 GMO, GM 식품 및 GM 사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접근방법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식탁에까지 이르는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GMO에 대한 완전한 추적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GMO로부터 생산되거나 GMO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표시를 함으로써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7월 2일 GMO를 표시하고 추적하며, GMO로부터 파생되는 식품 및 사료를 표시하고 시장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EU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개의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새로운 법규 제정을 계기로 EU는 GMO, GM 식품 및 GM 사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접근방법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식탁에까지 이르는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GMO에 대한 완전한 추적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GMO로부터 생산되거나 GMO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표시를 함으로써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환경위원 Margot Wallstrom은 유럽연합 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오늘의 투표는 GMO에 대한 EU의 법규

제정을 위한 중요한 진척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의 국제 신용도를 향상시켜줄 것이며, 신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제안을 지지해 준 유럽연합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에서 우리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생산 및 유통 사슬 전체의 모든 단계들에서 GMO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는 탄탄한 안전 시스템과 포괄적인 표시체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GMO가 환경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중들의 가장 비판적인 우려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 연합 의회가 채택한 제안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추적가능성(traceability)

추적가능성은 생산 및 유통사슬 전체를 통해 GM 상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특정 종류의 상품에 대한 추적가능성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존재해왔었다. 그러나 GMO를 함유하고 있거나 GMO로부터 파생된 상품에 대한 특별한 추적가능성 요구에 대한 대안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적가능성은 또한 환경에 대한 모든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표시 및 감독을 정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는 또한 어떤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추적가능성과 표시에 관한 새 규정은 기업 경영자들이 GM 상품을 이용하거나 취급할 때 시장의 각단계마다에서 정보를 부가하고 다음 단계로 이전시킬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상품 안에 GMO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상업적 공급사슬 전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야만 하며,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산업부문은 GM 상품이 누구로부터 나왔고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전달 및 저장은 상품 표본을 추출하고 시험할 필요성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검사 및 통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조율된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표본추출 및 시험 방법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개발할 것이다.

2. 표시

이번 제안서에는 현행 법규에 제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다음의 상품들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1) 최종 상품 안에 유전자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단백질 또는 DNA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MO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품
- (2) 유전자 변형된 모든 종류의 사료

3. GM 식품

지금도 소매상들은 GMO를 함유하고 있거나 GMO로 이루어진 식품에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시의무 품목에는, 최종 상품(예를 들면,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한 전분)에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성된 DNA나 단백질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모든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시규정은 유전자 변형 콩이나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부터 생산되는 과정에서 고도로 정제된 콩이나 옥수수 기름과 같은 어떤 종류의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법은 현

채의 표시 의무를 그러한 식품(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로부터 생산된 콩기름 또는 옥수수 기름)과 GMO로부터 생산된 식품 첨가물(비스켓 안에 함유되어 있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부터 생산된 옥수수 기름)에도 적용시키도록 그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표시에는 “이 상품은 유전자 변형 유기물(GMO)을 함유하고 있음” 또는 “유전자 변형 ‘유기물 명칭’으로부터 생산되었음”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4. GM 사료

이번 제안서는 또한 GM 식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을 토대로 하여 GM 사료에도 포괄적인 표시의무를 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다. 현재 GMO로부터 생산된 사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의무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 채택된 제안서를 통해 EU 규정이 마련된다면, 예를 들면 GM 콩 사료와 GM 콩 사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복합사료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될 것이다. 그리고 GM 옥수수로부터 생산된 옥수수 글루텐 사료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될 것이다.

5. 표시의무의 기준

유전자 변형 과정이 개입되지 않는 관행적인 식품이나 사료에서도 경작, 수확, 운송, 가공 등의 과정을 통해 경미한 수준의 GMO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 이 같은 일을 우리가 좋아하던 싫어하든 간에, 그러한 가능성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GMO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식품, 사료, 종자의 생산에 있어 100% 순수한 상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EU의 목표는 법률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관행 식품이나 사료가 GMO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거나 GMO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표시해야만 하는 상한선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행 법규 하에서는 GMO 함량이 1% 미만이고 그러한 함유가 우발적이거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번 제안서를 채택하면서 그 기준을 0.9%로 더욱 강화시켰다.

6.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현행 법규 하에서는, EU의 과학적 리스크 평가를 통과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는 식품이나 사료 안의 우발적인 GM 물질 존재에 대한 허용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번에 해당자가 그러한 GM 물질의 존재가 기술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발적 또는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GM 물질 잔류 허용치를 0.5%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와 같은 기준치를 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시장유통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3년간 유효하게 된다.

7. 승인 절차

현재 EU에는 GMO 및 GM 식품에 대한 평가와 승인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절차의 책임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안서는 GMO, GM 식품, GM 사료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승인을 위해 “하나의 출입문에는 하나의 열쇠”라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그 결과 관련자가 평가 신청을 1회만 해도 되도록 중앙집권화되고 명확하며 투명한 EU 수준에서의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GMO는 그것이 실제로 사용

될 예정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과학적 리스크 평가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기구의 의견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대중들은 그에 대해 의견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유럽 식품 안전청의 의견을 토대로, EU 집행위원회는 승인을 부여하거나 기각하기 위한 제안서 초고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그 제안서는 현재와 같이 ‘규제 위원회(Regulatory Committee)’에서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채택 또는 기각될 수 있도록 회부될 것이다. 승인된 제품은 GM 식품 및 사료로서 공적으로 등록될 것이다. 승인은 10년간 유효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시장유통 이후(post-market)’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계획이 작성될 것이다. 승인은 10년 주기로 갱신가능하다.

GM 식품을 기존 식품과 상당부분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단순한 절차는 폐기될 것이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GM 제품은 시장유통 승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자는 새로운 법의 발효로부터 6개월 안에 EU 집행위원회에 추적방법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법은 또한 추적방법을 검증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게 될 새로운 ‘표준 실험실(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로서 집행위원회 산하에 ‘연합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합연구센터는 ‘GMO 실험실 유럽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GMO laboratories)’와 지속적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기존의 GM 제품들은 또한 공적인 등록을 촉해야만 할 것이며, 해당 제품이 시장에 진입한날로부터 10년간이라는 기준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8. 공존

유기농작물과 관행농작물 생산이 GM 작물과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 유럽 의회에서의 논의과정 중에서 ‘GM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 초고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은 여타의 상품 속에 의도하지 않게 GMO가 섞이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회원국들에의 권고안(Recommendation to the Member State)’을 작성할 것이다.

9. 향후 일정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과들을 확정하여, ‘유럽연합 공식 저널(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운 규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GM 관련자들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표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준수해야한다.

자료: EU, RAPID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U, 공동농업정책 개혁 합의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26일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혁은 2002년 7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중간개혁안(MTR)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EU 농업생산과 DDA 농업협상에 크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개입

EU는 품목별로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개입가격을 설정, 시장가격이 그것을 하회하면 관계기관이 전량 매입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매입한 농산물은 수출보조금을 부과, 해외에서 처리하는 등 역내 시장안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급 과잉과 재정부담 과중이라는 부작용도 동시에 안고있다. 그래서, 1992년 CAP 개혁에서는 개입가격을 3년간 29% 인하하는 대신 인하분을 전액 '소득보상' 직불로 대체하였다. 이 직불은 생산조정과 연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아젠다 2000년에는 재정부담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개입가격을 2년간 15%를 인하하는 대신 하락분의 50%를 직접지불로 대체하고, 절약된 예산은 농촌개발에 충당하고 있다.

2.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단일직불제 도입

현재 EU는 소득보상적 직불로서 경종작물보상직불, 쇠고기장려금, 양장려금, 신낙농직불보상금, 감자디카플링직불, 두류보상직불, 쌀보상직불, 종자보상직불, 조사료보상직불 등 품목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당년도의 식부면적과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산과잉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번 CAP 개혁에서 생산을 왜곡하지 않는 ‘단일직불제’(single farm payment)로 전환하였다. 과거 기준기간(2000-02년간)의 농가별 평균수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대상작물이나 식부면적에 관계없이 2005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다. 단지, 경작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있다.

3. 가격소득지지 예산의 감축이 과제

또한, EU는 2004년 5월부터 동구 10개국이 신규로 가입하게 된다. 따라 예산 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2년 현재 957억 유로의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은 468억 유로로서 49%를 차지한다. 이 중 가격소득지지예산이 399억 유로에 달한다.

EU는 2002년 10월에 신규가입으로 가격소득지지예산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430억 유로, 2007년 458억 유로, 2010년 471억 유로, 2013년 486억 유로 등 상한을 설정해 두었다. 가입가격을 인하하여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이다.

표 1 EU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방향

연도	주요내용	비고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 개혁(UR협정 준수) ①개입가격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종부문, 축산부문 ②소득보상직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조정 연계한 경종부문만 실시 ③생산조정 의무화 	○ 1993-99년 실시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젠다 2000(agenda 2000)(재정지출 억제) ①매입가격 인하 ②직접지불 단가 인상 ③농촌개발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대책 및 조건불리지역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6년 실시 ○ 2002년 중간보고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개혁안(mid-term review) (DDA 협상 · 동구가입 대비) ①직접지불의 디카플링 ②직접지불의 공동준수사항 강화 ③농촌개발 예산증액 	○ 2002년 7월 제안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 개혁안(DDA · 동구 10개국 가입대비) ①단일직접지불 도입(2005년부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식품안전, 동물복지 연계 (cross-compliance) ②직접지불액 인하(modulation) ③개입가격 인하(축산물,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은 제외 ④농촌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6월 26일 합의 ○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그러나, 이번 CAP에서 개입가격 인하는 당초 목표보다는 완화되었다. 지난해 7월 EU 집행위는 MTR에서 2년간 5% 인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의 반대로 곡물은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단지, 쌀은 50% 인하하되, 인하분의 80%를 직불에 추가하고, 탈지분유와 버터는 각각 15%, 25% 인하에 합의하였다.

4. DDA 농업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

EU는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개입가격의 점진적인 인하를 단행하면서, 단일직불을 농정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도 고정직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정형’ 직불이 세계적인 조류로 정착하고 있다. 지급액을 인하하면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단일직불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하여 과잉문제 해소와 다원적 기능증진에 노력하는 점이 EU의 새로운 시도이다.

또, 개입가격 인하와 단일직불제 도입으로 EU는 DDA 협상에서 국내보조 감축에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시장접근이나 수출보조는 이번 개혁에서 제외되었지만 국내보조는 2002년 농업법에 의해 가격지지를 높이고 있는 미국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 향후 EU는 미국의 요구대로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한다면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을 포함하는 공세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더구나, 이번 개혁에서 미국의 관심품목인 곡물의 개입가격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피솔리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변화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CAP 개혁은 지난 3월말 농업모델리티협상이 결렬된 이후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양자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대립 구도로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주요내용

1. 단일 직접지불제도(single farm payment)

개별 공동시장기구(Common Market Organization)의 대다수 보조금들은 단일 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로 대체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EU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더 이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게 되며, 농민들은 기준연도(reference period)인 2000년~2002년 동안의 기준금액(reference amount)에 근거하여 단일농가 직접지불을 받게 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생산과 연계된 경종부문(arable sector)의 경우 경작포기(land abandonment)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ha 당 현행 직접지불금의 25%까지 유지할 수 있다. 대안으로써 듀럼밀의 경우는 추가직불의 40%까지 생산과 연계되어 유지할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회원국들은 현행 수유용 암소 장려금(suckler cow premium)을 100%까지 그리고 도축 장려금을 40%까지 유지하거나, 혹은 도축 장려금을 100%까지 혹은 수소 특별장려금(special male premium)을 75%까지 유지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조건불리지역(less favoured area)의 추가보조금(supplementary premium)을 포함하여 면양과 산양에 대한 보조금 수준은 최대 50%까지 생산과 연계하여 유지할 수 있다.

만일 회원국들이 원한다면 에게 군도와 일부지역의 직접지불과 곡물에 대한 건조 보조(drying aid)는 생산과 연계하여 유지할 수 있다. 낙농 보조금은 일단 낙농부문의 개혁이 충분히 이행된다면 2008년부터 단일농가 직접지불에 포함될 것이다. 회원국은 이런 체계를 초기에 도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특별협정(special arrangement)이 쌀, 듀럼밀, 전분, 건조(dried fodder)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된다. 회원국들은 환경, 고품질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하는 특정 영농형태를 권장하기 위해서 단일농가직접지불금 총액의 최대 10%까지 농민들에게 추가직접지불을 지급할 수 있다.

개혁안에 따른 새로운 농가보조 방식은 200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만일 한 회원국이 특정 농업환경 조건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을 요구할 경우, 늦어도 2007년부터 단일농가 직접지불을 시행할 수 있다. 과도한 경쟁왜곡을 극복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경, 식량안전, 동물건강 및 후생기준

단일농가 직접지불과 기타 직접지불은 동물후생 기준뿐만 아니라 환경, 식량안보, 동식물 건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사항들과 연계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는 농촌경관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상호준수의무 요건을 위반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위해성 및 손실에 비례하여 직접지불이 축소될 수 있다.

3. 농가지도제도(Farm Advisory System)

회원국들은 2006년까지 자발적으로 농가지도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2007년부터는 농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자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농민들은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사회(Council)는 2010년에 자문제도의 기능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농민의 의무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준이나 바람직한 영농방식을 생산과정에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민에게 자문(advice)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농가회계감사(Farm Audit)는 자금의 흐름(material flows)과 조성과정과 관련하여 환경, 식량안보, 동물후생 등 핵심쟁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기업들의 체계적인 현황과약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농가회계감사는 농촌개발 정책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다.

4. 농촌개발 강화

EU는 농촌개발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조치의 도입과 함께 농촌개발 지원범위 또한 확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200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EU 회원국 및 주변국들은 자신의 농촌개발정책 내에서 관련 조치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식량안보 및 품질에 관한 관심사항을 보다 잘 반영하고, 농민들이 EU의 법령에 기초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높은 수준의 동물후생 기준을 권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고, 유럽 사회의 다양한 기대에 반응하기 위한 주요 목적이며, CAP의 종합 개혁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새로운 소득기회(농업환경 서비스, 고품질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 새로운 품질 인센티브(quality incentive) 제도 도입

인센티브 직접지불(incentive payment)은 과거의 생산방식과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된 조치에 참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런 보조는 최대 5년 동안 매년 농가 당 3,000€까지 지원될 수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위에서 언급한 조치에 따라 지원된 고품질 계획(quality scheme) 하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사업 등에 대해 지원을 받게 되며, 대상 사업비용의 최대 70%까지 공공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4.2. 기준 달성을 위한 농민 대상 새로운 지원제도

농민들은 환경, 대중, 동식물건강, 동물후생, 직업안전 등과 관련하여 각국이 아직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EU 법령에 기초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정액기준(flat-rate basis)에 근거하여 최대 5년 동안 연간 농가 당 10,000 한도 내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보조를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농민들은 농가지도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서비스 비용의 최대 80%인 1,500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3. 동물후생에 소요되는 농가비용 보조

적어도 5년 동안 사육 가축의 후생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사육 방식을 추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보조가 제공될 예정이다. 농민들은 이런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포기한 소득과 추가비용을 근거로 매년 가축두수당 최대 500의 한도 내에서 보조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영농후계자에 대한 투자지원 개선을 위해 영농후계자에게 EU의 투자보조 수준이 증액될 예정이다.

5. 예산배정

5.1.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감축

추가되는 농촌개발조치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수준이 보조금조절(modulation)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축될 전망이다<표 1>. 개혁안이 타결됨에 따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은 보조금 조절 규정에서 제외될 것이다.

표 1 대농에 대한 연도별 보조금 감축비율

단위: %

직접지불 대상 규모별 농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2013년
연간 5,000€ 이하	0	0	0	0
연간 5,000€ 초과	3	4	5	5

주: 연도는 예산연도(budget year) 기준임.

보조금조절 비율(modulation rate)을 5%로 할 경우 연간 12억€에 달하는 농촌개발기금이 추가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보조금 조절 규정을 통해서 발생된 기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기금 가운데 1%포인트는 예산을 지원한 회원국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99%포인트에 해당하는 기금은 농경지면적, 농업취업자, 구매력평가에 따른 1인당 GDP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국에게 분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적어도 보조금조절 기금의 80%를 받게 될 것이다. EU 가맹국들의 직접지불은 EU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직접지불 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5.2. 재정지원 상한설정

지난 2002년 10월 개최된 브뤼셀 정상회담(Brussels Summit)에서 공동농업정책(CAP) 한도를 고정시켰다는 사실은 재정규율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되어 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지불은 CAP 지출한도가 특정 예산연도에 초과될 것으로 전망될 경우에 고정되도록 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Council)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직접지불을 고정하도록 조정할 것이다.

6. 시장안정화 및 공동시장조직 개선

6.1. 경종부문(arable sector)

6.1.1. 곡물

곡물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다. 경종작물에 대한 기본 보조금액은 톤당 63€를 유지할 것이다. 기존 개입가격에 대한 계절조정은 50% 수준까지 인하될 것이다.

추가적인 재고누적을 피하기 위해서 호밀은 정부보조 정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환조치(transitional measure)가 적용될 것이다. 호밀 생산 비중이 국내 총 곡물생산의 5% 이상이고 EU의 총 호밀생산의 50% 이상인 회원국의 경우, 보조금 조절 기금의 90%를 활용할 수 있다. 적어도 이 기금의 10%는 호밀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6.1.2. 단백질 작물

단백질 작물에 대한 보조는 현행 수준인 톤 당 9.5를 그대로 유지하고,

특정작물 대상 면적기준 직접지불로 전환하여 ha 당 55.57로 조정될 것이다. 이것은 140만 ha에 달하는 새로운 최대 보증면적(Maximum Guaranteed Area, MGA) 한도 내에서 지원될 것이다.

6.1.3. 에너지 작물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에너지 작물에 대해 ha 당 45를 제안하고 있다. 적용 대상 면적은 최대 150만 ha에 달할 것이다. 이 보조는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가공업체를 제외하고 농민과 가공업체간에 맺은 계약에 포함된 생산면적을 대상으로 지원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런 에너지작물에 대한 보조조치가 적용된 이후 5년 이내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서와 함께 이사회(Council)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6.1.4. 듀럼밀

전통 생산지역에서의 듀럼밀에 대한 보조는 생산과 분리되어 지원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40%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는 ha 당 2004년에 313, 2005년에 291, 2006년에 285로 고정되고, 단일농가 직접지불에 포함될 것이다. 현행 ha 당 139로 설정된 듀럼밀 지원 대상 기타 지역의 특정 보조는 2004년을 시작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세몰리나(semolina)와 파스타를 만드는 듀럼밀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품종의 공인(certified) 종자를 사용하는 전통생산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장려금(premium)이 도입될 것이다. 장려금은 전통 생산지역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대 보증면적의 한도 내에서 ha 당 40를 지불할 것이다.

6.1.5. 감자전분

현행 정책에서는 감자전분 생산자에게 직접지불을 제공하고 있다. 아젠다 2000(Agenda 2000)에서는 전분에 대한 직접지불 금액을 톤당 110.54로 고정한 바 있다. 이 직불액의 40%는 과거 이행실적에 기초하여 단일농가

직접지불에 포함되고, 나머지 직불액은 감자전분에 대한 특정 작물 대상 직접지불로써 유지될 것이다. 전분 대상 생산 상환금(production refund)과 함께 최소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6.1.6. 건초

건초에 대한 보조는 재배업자와 가공업체간에 재분배될 것이다. 재배업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과거 이행실적에 기초하여 단일농가 직접지불로 통합될 예정이다. 보조 한도는 현행 국가별 보증수량을 고려하여 적용될 것이다. 가공업체에 대한 보조는 2004/05년에 톤당 33€으로 고정될 것이다. 2008년에 집행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서와 함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6.2. 쌀

이사회는 최빈국과 개도국에게 각종 경제개발사업의 혜택을 제공하는 EBA (Everything but Arms) 법안(initiative)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장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제시장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입가격을 50% 인하한 톤당 15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입물량은 연간 75,000톤으로 제한될 것이다. 생산자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현행 직접지불 금액은 지난 1992년과 아젠다 2000 개혁안에서 제시한 총 곡물 보상비율을 맞추고자 톤당 52에서 177로 증액될 것이다. 이 금액 가운데 톤당 102는 단일농가 직접지불에 포함되고, 현행 최대 보증면적에 의해서 제한된 과거 권리에 기초하여 지불될 것이다. 1995년 개혁안의 단수에 의해서 곱해진 나머지 톤당 75는 특정 작물대상 보조로써 지불될 것이다. 최대 보증면적은 1999년~2001년 평균면적 혹은 현행 최대 보증면적 가운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7. 견과류

견과류에 대한 현행 보조는 연간 고정요율(flat rate) 지불방식에 따라 아

몬드, 헤이즐넛, 호두, 피스타치오(pistachios), 로커스트콩(locust bean) 등을 대상으로 80만 ha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ha 당 120.75로 대체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신축적으로 자신들의 보증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런 보조는 회원국별로 ha 당 연간 최대 120.75까지 유지할 수 있다.

8. 낙농품

이사회는 축산농가에게 안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혁된 낙농 쿼터제의 시행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우유의 비대칭 가격인하를 결정했다. 버터 개입가격은 아젠다 2000 개혁안과 비교하여 10% 추가 감축된 수준에서 결정된 바, 2004년~2006년에 매년 7%, 2007년에 4% 인하(4년 동안 총 25% 인하)될 것이다.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가격은 아젠다 2000 개혁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2004년~2006년 3년 동안 매년 5%씩 인하하여 총 15% 인하될 것이다.

버터의 정부 개입물량은 2004년에 최대 7만톤을 유지하고, 2007년부터 3만톤으로 감소하게 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경매절차를 통해서 처리될 것이다. 우유의 목표가격(target price)은 폐지될 것이다. 보조금은 톤당 2004년에 11.81, 2005년에 23.65, 2006년 이후 35.5로 고정될 것이다.

낙농품에 대한 단일농가 직접지불은 회원국들이 초기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개혁이 충분히 이행된 이후에 적용할 것이다. 위원회는 그리스의 우유 쿼터량을 12만톤 증가하기로 결정했다.

9. 올리브유, 담배, 면화에 대한 개혁

집행위원회는 2003년 가을에 올리브유, 담배, 면화 부문의 개혁안을 제

출하게 된다. 이 개혁안을 통해서 집행위원회는 예산배정을 감안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장기전망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은 현행 종합개혁안(reform package)의 목적과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자료: EU, Press Release, IP/03/898, 2003. 6. 26.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중국, GMO 무역에 대한 규제 동향

세계 많은 국가들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무역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아직은 GMO가 안전하다거나, 불안전하다는 믿을 만한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GMO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소비하고 있는 제품이 GM 제품인지 여부를 알 권리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GMO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해롭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국제무역에 대하여 무역금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안전성 평가, 강제표시부착, 수출입허가 등 방식을 취하여 이러한 제품의 무역이 국가의 규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1. GMO 무역에 대한 규제 법률

중국 국무원은 2001년 5월 9일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의하여 중국은 GMO의 수입, 수출과 국경이동에 대해 일률적인 관리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규제의 중점은 GMO의 수입이다. 이 조례는 중국내의 GMO 수입에 대해 안전등급관리평가제도와 강제적인 표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는 원래 공포한 날부터 실시되도록 규정되었지만, 당시 실시에 대한 관련 세부원칙이 규정되지 않았고, 또한 이 조례의 영향을 받게 될 국가,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법규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연기를 하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법규의 실시방식은 WTO의 투명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또 공포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법규의 영향을 받게 될 상인들이 이 법규의 적용에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된 즉시 실시되지 않았다. 중국 농업부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생물수입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생물표시관리방법’을 공포하였다. 이 세가지 ‘방법’은 모두 조례의 세부적인 실시규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방법들은 2002년 3월 20일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있지만 미국이 앞에서 언급한 법규의 실시 문제에 대하여 중국 측에 수차례 협상을 요청한 것에 대응, 중국 정부는 실시 시기를 2002년말로 연기하였다. 이것이 시행되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GM 대두와 GM 옥수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의 국가품질검역총국은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출입경유전자제품에 대한 검험검역관리방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방법은 2002년 12월 20일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각 항구에서는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례조례’와 관련 실시방법에 근거하여 GMO 수입에 대해 검역을 진행하게 된다.

2. GMO 수입에 대한 규제내용

중국에서는 GMO 수입에 대해 등급별 안전평가제도와 강제적 표기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GMO가 인류, 동식물, 미생물과 생태환경에 주는 위험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농업부에 소속된 국가농업유전자생물안전위원회에서 책임지고 GMO 수입에 대해 안전평가사업을 진행한다. 또,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사무실에서는 수입된 GMO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이들 두 기관은 매년 두 차례 유전자생물안전평가사업

을 실시하고, 수입한 GMO가 심사 합격되면 ‘농업유전자생물안전증서’를 발급한다. 중국내 수입상 혹은 국외 수출상은 수입시 농업부에서 발급한 농업유전자생물안전증서에 근거, 항구의 검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있다.

농업유전자생물안전증서 외에 수입상 혹은 국외 수출상은 수입하는 GMO의 표시용도, 예를 들면 연구와 실험에 사용하거나, 생산 혹은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등에 따라 비준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비준신청은 9개월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농업유전자생물표기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수입하는 GMO는 유전자표기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데 표기는 수입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입된 GMO가 중국내에서 도매, 소매 혹은 가공후 판매될 때에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즉, 유전자 표기는 유전자제품의 주민등록증처럼 유전자제품의 생산에서 판매,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채널에 나타나게 된다.

표기방법은 세가지이다. 수입된 대두를 예를 들면, GM 대두를 수입할 때 외포장, 표기관 혹은 검역신고서에 ‘GM 대두’라고 표기한다. 수입한 후, 대두유로 가공되어 판매될 때 ‘GM 대두 가공품’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만약 GM 대두유로 가공한 밀가루 제품을 판매할 때, 가공된 밀가루제품에서 유전자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이 제품의 가공원료에 GM 대두유 함유. 단지, 현재 이 제품에는 GM 성분 불포함’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이 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된 GMO 표기는 농업부의 심사를 통해 인가 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국외 수출상 혹은 국내 수입상들이 관련 표기를 제품에 사용하기 전에 중국의 관련 농업주관부문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현재 농업부는 인가 권리를 각 성의 농업국에 위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경시 농업국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농업유전자생물표기심사인가절차’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자체로 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우선 신청해야 하는 방법은 수출입상들의 업무를 증가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표기규정은 수입하는 GMO에 대해 요구하는 동시에 국산 GMO에 대해서도 유전자 표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MO의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만 WTO의 규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관련 표기법규가 정식으로 실시되면 시장에서 국산 GMO이든지 수입 GMO이든지 모두 법규에 따라 엄격한 표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상황은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 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유전자생물표기관리방법’에 근거, 모든 GMO를 대상으로 표기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 농업유전자생물표기목록에 표시된 것만 표기 규정을 준수한다. 이 목록은 농업부와 국무원의 기타부문에서 확정, 조정, 공포하고 있다. 현재 표기관리실시에 포함된 첫 유전자생물목록에는 5종류 17 품목이 있다. 여기에는 ①대두종자, 대두, 대두분, 대두유, 대두박, ②옥수수종자, 옥수수, 옥수수분, ③유채종자, 유채박, ④면화종자, ⑤토마토종자, 신선토마토, 토마토 캐첩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목록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유전자 표기제도의 실시범위와 실시강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상 범위로 볼 때 이러한 목록에 선택된 품목은 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목록의 제품은 중국에서 비교적 많이 수입하는 GMO이다. 반면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GM 쌀과 기타 GMO, 예를 들면 GM 고추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도로 볼 때, 수입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고 국내가공 혹은 판매에 대한 관리는 약하다. GM 대두를 예로 들면, 5종류의 대두제품만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두가 수입된 후 대두유 외에도 두유분, 두유, 두부, 간장 등 여러 제품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두

유는 또한 기타 식용유와 혼합되어 튀김용 기름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두 혹은 대두유 가공품은 표기요구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법규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농업유전자생물표기관리방법’에서는 3가지 표기 방법을 규정하였다. 그 가운데 세 번째 형식은 GMO 혹은 GM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제품을 대상으로 제정하였는데, 그 관리방법 규정에 의하면 만약 이런 가공된 제품에서 유전자성분을 검출할 수 없으면 ‘이 제품은 유전자 XX로 가공되었지만 GM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첫째는 제품 중 함유되지 않았고, 둘째는 제품에서 GM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째를 볼 때, GM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국외의 입법 경험으로 보면 제품중 GM 성분이 일정비율(예를 들면 1%) 미만일 경우에 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즉 이 경우를 GM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법규에는 최저비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어떠한 미세한 함량도 GM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은 가공원료에 소량의 GM 성분이 섞여있는 가공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가공원료에 극소량의 대두유가 함유된 과자가 ‘GM 성분을 함유하지 않음’이라는 표기를 부착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종류의 표기방법을 보면 입법자는 검측기술의 진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가공된 제품 중의 GM 성분을 검측해 낼 수 없다는 것은 검측기술이 제고되면 금후에도 검측해 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품중에 GM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GM 성분을 검측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표기제도는 검측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 큰 범위로 파급되는 것은 아닌가. 또한 검측기술과 수단을 볼 때, 전국 여러

검측기관이 모두 동일할 것인지.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A에서는 검측해 내고 B에서는 검측해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의문이 있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GM 기술이 발달한 국가이다. 물론 미국이 장악한 GM 기술이 중국보다 높다. 미국은 GM 기술과 GM 제품의 수출을 이익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GMO에 대한 제한은 아주 적다. 또한 상당히 많은 미국회사, 과학자, 기관은 GMO가 전통 농산품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무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과 반대로 유럽에서는 GMO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시종일관하게 지켜오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는 식품오염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있다.

예를 들면, 오염된 유제품, 광우병과 독일에서 나타난 생태사료와 생태식품에의 제초제 오염 등과 같은 사건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해 더욱 높은 요구를 하고 있어 정부도 GMO 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GM 표기의 광범한 사용으로서 GMO와 비 GMO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음식점과 소매점에서도 판매하는 식품이 GM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에는 GMO가 실제로 대량 존재하고, GMO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GMO가 여러 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MO 판매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를 진행한다는 것은 유리한 일만은 아니다.

3. GMO 규제 실시 연기

중국 정부의 GMO 규제 조치는 특히 GM 대두 생산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있다. 때문에 중국은 GMO 규제에 대하여 실시 기한을 두차례에 걸쳐 연기하였다.

또한, 농업부는 금년 5월말에 GMO 수입규제의 실시기한을 2004년 4월 20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문건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상인들은 이 발표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이다. 그들은 정부에서 정식 서면문건이 발표된 후에야 금년 하반기의 대두 수입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경에 있는 한 무역상인은 “우리는 정부에서 대두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가 봐 걱정이다. 예를 들면 시행연기 발표에 대한 관련 문건을 8월에 발표한다면 8월달 대두수입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면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된다”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무역상인들은 대두무역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가는 농업부에서 서면문건을 발행하는 시기에 달려있다고 있다. 정부에서 서면문건을 발행하기만 하면 국외무역회사 등 일부 대두 공급상인들은 농업부에 새로운 안전인증서를 신청해야 하는데 인증서의 발행은 1개월 소요된다. 그래서 서면문서의 발행시기가 늦어질수록 대두 수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다.

자료: <http://www.agri.gov.cn>(중국농업정보센터)에서
(리 쿼 leekum@hanmail.net 02-521-6503 세계농정연구원)

중국, 농촌정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중국의 '3농문제'(농업·농촌·농민문제)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16기 전인대 보고에서는 3농문제에 대한 매우 다양하고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또 얼마 전에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도 3농문제의 해결을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중국에서 농촌업무는 당의 전체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농촌의 현대화 없이는 전국의 현대화를 이룰 수 없으며, 농촌에 소강(小康: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사회의 전면적인 건설 없이는 전국에 소강사회 건설을 이룩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의 주임인 린이푸(林毅夫) 교수의 중국 농촌정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1. 농업부문의 축적자본으로 공업발전 지원

2001년 중국의 농업총생산액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이며, 2001년 농업세입 총액은 285.8억 위안(元)이며, 경지점용세, 농업특산세(農業特産稅) 및 거래세(契稅) 등을 포함하면 481.7억 위안에 달한다.

당해연도 중국의 사회고정자산투자총액이 37,213.49억 위안이므로 설령 각종 농업세를 배 이상 올려서 공업건설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회고정자산투자는 1.3% 증가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상의 비교에서 중국

은 농업부문에서 축적한 자본으로 공업 발전을 지원하는 단계는 벌써 지났으며, 공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은 비농업부문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는 단계 도달

현재 중국의 3농문제는 현저하게 대두되고 있다. 3농문제의 핵심은 농민의 소득문제로서 ‘어떻게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인가’가 각계 각층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하여 감축대상보조(amber box)정책에 의거 중국 정부가 농민의 소득보조를 농업총생산액의 8.5%까지 할 수 있다.

현행 중국 정부의 감축대상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3.3%로서 아직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5.2%의 보조 공간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책은 여분 없이 100%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의 농업총생산액이 26,180억 위안이고 3.3%의 보조는 864억 위안인데, 만약 이를 8.5%까지 높인다면 보조총액은 2,225억 위안으로 현재의 보조금보다 1,361억 위안이 증가하여 농민 1인당 171위안의 이전소득을 더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학자들은 공업부문의 세수를 증대하고 감축대상보조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정말 이런 단계에 도달하였는가? 다음 네 가지 이유로 인해 중국이 농업보조를 증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 중국의 재정수입으로는 이렇게 방대한 보조를 지원할 수 없다. 2001년 중앙재정수입은 8,582.74억 위안으로 현행 3.3%의 보조로 계산해도 이미 중앙재정수입의 10.1%를 차지하며 여기에 지방재정수입 7,803.3억 위안을 합쳐도 중앙·지방재정총수입 16,386.04억 위안의 5.3%에 해당

한다. 2001년 농촌주민의 1인당 평균 순수입은 2,366위안이다. 만약 정부가 감축대상보조정책의 한도를 채울 경우 농촌주민의 평균 순수입은 겨우 7.2% 증가에 그치나 이 정책의 시행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타 국가건설에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농업에 대하여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 과잉을 유발한다면 일련의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농산물은 일단 심각한 과잉이 발생하면 이 농산물은 국내에서 폐기하거나 아니면 저가로 국외에 판매하게 된다. 중국의 소득이 아직은 보조를 통해 이러한 대량의 농산물을 국내에서 폐기하여 낭비할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험에서 볼 때, 과잉농산물을 저가로 해외에 판매할 경우 일련의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유럽이나 미국 모두 자국의 농산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과잉생산이 나타나고 나아가 이러한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시도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 국가가 농업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산물을 자국 시장에 덤핑판매하고 있다고 비난해오고 있으며, 결국에는 미·유럽간 외교 및 무역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양호한 국제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이 향후 20~30년간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에 지극히 중요하며, 농업에 대해 보조를 실시하게 되면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곤경에 처하게 되어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양호한 외부환경 유지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이 농업에 대한 보조를 일단 실시하기 시작하면 이를 폐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보조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상황이 곧 그러하다. 일본은 현재 통화긴축이 매우 심각하다.

2년전 중국은 아세안+3개국 자유무역지대 건립을 제의하였다. 이는 일

본이 공산품 해외시장과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현행 통화긴축의 곤경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중국의 제의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비록 일본의 농업인구가 총인구의 3.9%, 농업 GDP가 총GDP의 2%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일본의 농산물에 대하여 고액보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만약 일본이 이 자유무역지구에 가입하게 되면 일본의 농업은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은 일본에서 하나의 중요한 정치이익집단이므로 3.9%의 농업인구의 기존의 이익을 위하여 일본 정부는 부득이 일본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였다. 중국은 농업보호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일본, 미국, 유럽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

넷째, 농산물에 대한 보조는 집행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다. 가령 불확정 보조(反週期補助), 즉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 감소에 대한 보조를 실시한다고 할 경우, 심각한 동기유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농업생산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 농가의 생산 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인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로 투입을 줄여 감산한 후 정부 보조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직접지불에 의한 농민소득보조를 실시한다면, 외국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보조를 받아야 할 농민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각 방면으로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등소득자 심지어는 부유한 농민이 보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의 농업보조가 곧 이와 같은 상황이다. 미국의 농가호당 평균 받는 보조는 12,500달러이나 전체농가 중 약 10%에 드는 대규모농장이 받는 호당평균 보조는 무려 85,000달러에 이른다.

3. 중앙정부에 의한 농촌재정 지원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이유에 의해 중국 정부는 현재 감축대상보조를 증가시킬 충분한 재정이 없고, 또한 장차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재정상 어떤 조치들을 취하여 농업·농촌·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가?

3.1. 농업세와 농업특산세 폐지 가능성

2001년 중국의 농목업(農牧業)세는 285.8억 위안이고 경지점용세, 농업특산세 및 거래세(契稅)가 195.9억 위안으로 각종 농업세 합계는 481.7억 위안이다.

각종 농업세는 2001년 중앙정부 재정수입의 5.6%에 불과하다. 2002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총액은 7,332억 위안인데, 만약 지방정부가 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특별이전지출로 지방정부를 보조한다면 이로 인해 감소되는 세수를 중앙정부가 증액해야하는 이전지출은 6.6%에 불과하고, 만약 경지점용세, 농업특산세 및 거래세만을 면제한다면 중앙정부가 증액해야하는 이전지출은 단지 2.7%이므로 재정상 감당할 수 있다. 만약 일시에 각종 농업세를 전면 폐지하기 어렵다면 농업특산세를 우선 폐지시켜야 한다. 농업특산세는 시장경제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최근 수년간 지방의 세무인력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농업특산세 징수 등과 크게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징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징수인력을 증원하게 되고, 이렇게 증원된 인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세수를 증가시키게 되며, 이렇게 되면 세금 징수가 더욱 어렵게 되며 결국 더 많은 징수인력을 증원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농업특산세를 취소

하면 징수인력을 대폭 감원할 수 있으며 농민의 부담도 더욱 경감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마땅히 노동집약형 농산물을 적극 발전시켜야만 비로소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가져다 준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업특산세를 징수하면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발전에 불리하다.

3.2. 중앙재정으로 농촌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임금 지급

현재 농촌의 의무교육은 현(우리나라의 군)을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데, 초등·중학교 교사의 임금은 현정부가 농민에게 교육부가세를 징수하여 지급하며, 부족액은 중앙정부가 이전지출로 지급한다. 그러나, 지방에서 교사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초등학교 교사 수는 총 579.8만 명인데, 중국 농촌지역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3분의 2인 것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초등학교 교사는 대략 약 380만 명이다. 이들 1인당 매월 임금을 500위안으로 계산하면 급여총액은 233억 위안이다. 중학교 교사는 총 334.8만명이고 3분의 2로 계산하면 농촌지역 중학교 교사 수는 약 223만명이며, 매월 1인당 임금을 800위안으로 계산하면 급여총액은 214억 위안이다.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임금을 합하면 446억 위안이다. 가령 이를 중앙정부가 전액 지급한다면 2001년 중앙재정수입의 5.2%에 해당한다. 중부와 서부지역의 많은 현의 교사 임금은 이미 중앙재정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실제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증가분은 이보다 줄어든다. 의무교육은 학령아동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은 물론 정부가 학령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농촌지역의 초중학교 교사의 임금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의무교육의 정신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농민 부담도 줄일 수 있다.

3.3. 농업과학연구 지원 강화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일부 지역의 농업과 농산물이 사실상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콩, 옥수수, 밀 등 토지집약형 농산물은 외국으로부터 수

입한 농산물과 경쟁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 실시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식량농업과학연구에 충분한 지원을 할 경우 중국의 식량 생산은 아직도 단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어 중국 식량생산의 자급자족은 문제가 없다.

또한 만약 품종 개량과 품질 개선을 통해 국제시장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WTO 가입은 중국의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발전에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식량과학연구, 특히 벼(水稻)과학연구는 세계에서 선두 위치에 있다. 그러나 노동집약형 농산물, 즉 채소나 과일 등 작물의 연구는 국제수준이나 대만수준에도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품목의 과학연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타 국가나 대만과 협력을 추진, 농업과학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농산물 품종을 개발하여 WTO 가입이 농민에게 좋은 기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3.4. 전국 통일의 농산물시장 건설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산물시장을 건설해야만 각 지역의 농업이 비로소 각자의 비교우위에 의거 배치될 수 있다. 동부지역은 경제 발전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비가 높아져 비교우위를 상실함으로써 일부 농산물 시장을 내주게 되었다. 만약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산물시장이 있다면, 중서부는 동부가 내어준 시장에서 이익을 얻게 되고, 동부가 중서부 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양성순환(良性循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내시장이 분할되면 동부지역의 농업생산이 비교우위를 상실, 외국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수입함으로써 국제시장과의 순환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중서부 농촌이 동부지역 경제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없다면 동·중·서부간의 격차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국 통일의 농산물시장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국 통일 시장은 도로, 통신, 운수, 창고 등 시설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건설에 있어서 일부는 각급 정부의 재정지원을 유도하고, 또 다른 일

부는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중개, 신용, 법률 등의 소프트웨어 건설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3.5. 농촌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이전에 유리한 조건 마련

현재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매우 크며,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중점과 과제는 “어떻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농민의 소득수준을 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단지 농업생산성 향상에만 의존해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농산물은 소득탄력도가 매우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농산물 수요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농산물은 가격탄력도가 낮은 특성을 갖고 있어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성 제고와 생산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민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이 될 수 없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은 오직 농업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1978년 개혁 개방이후의 상황을 예로 들면, 1978~84년간 농가소득의 증가는 농민의 적극성 제고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1985년 이후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향진기업이 약 1억명의 재촌탈농 농촌노동자를 흡수함으로써,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약 8,000만~1억인에 달하는 농업노동자의 도시 취업으로 달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3농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내 통화긴축 발생, 농업생산능력의 보편적 향상, 많은 향진기업의 파산으로 이농하고 농촌을 떠났던 농민이나 재촌탈농의 농민이 농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농업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이농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도시로 진출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장기관점에서 볼 때 다음 몇 가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농민의 호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헌법에 의거 모든 국민은 이주의 자유가 있으며 또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 등 특수한 도시

를 제외한 기타 도시의 호적은 개방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빨리 개방하여야 한다. 2002년도 일부지방은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일부는 다시 되돌아 온 상황이다. 호적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도시 진출 농민이 도시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둘째, 토지문제이다. 농촌에서 영전제(永佃制)를 실행하되 토지소유권은 집체에, 그리고 사용권은 농민에 귀속시키며 농가간에 유상으로 토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토지의 이동과 토지시장 건설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시로 진출하는 농민은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여 도시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획득할 수 있으며, 만약 도시의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발전과 안정 두 가지 측면에 공히 유리하다.

셋째, 비교우위에 따른 발전전략의 수립이다. 현재 중국의 비교우위는 노동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저렴하므로 마땅히 노동집약형 산업 또는 자본·기술집약형 산업 중에서 노동력을 비교적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더욱 많은 취업기회를 창출하여 농민의 도시 취업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상으로 언급한 세 가지는 농민의 취업이전을 촉진하는 장기조치이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생산능력의 보편적인 과잉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비농업부문의 투자와 취업기회가 증가하고, 농민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이농이 지속되어 농민소득도 도시주민과 대략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자료: http://www.agri.gov.cn/jjps/t20030526_86170.htm에서
(정정길 cgchung@krei.re.kr 02-3299-4368 농정연구센터)

중국, 무공해농산물 인증 실시

중국에서 무공해농산물이란 산지 환경, 생산 과정, 농산물 품질이 국가 관련 표준과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여 인증 합격을 통해 인증증서를 획득하고, 아울러 무공해농산물 표시 사용을 허용한 원료농산물과 1차 가공한 식용농산물을 지칭한다. 최근 전국 155개 단위(浙江省天台县蔬菜经济作物服务公司 등)의 214 품목의 농산물이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로부터 첫 번째 무공해농산물 인증을 통과하였다. 이 중에는 경종작물 115개, 축산물 15개, 수산물 84개이고, 총수량은 212만톤에 이르고 있다.

중국 농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 농산물 품질안전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 국제경쟁력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하여 국무원의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강화 관련 요구에 의거 농업부는 2002년 ‘무공해식품 행동계획’을 전면 실시하였다. 이로써 건전한 농산물품질안전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을 위하여 ‘논밭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5년 내외의 기간동안 노력한다면 기본적으로 식용농산물의 무공해 생산과 소비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무공해농산물 인증제도의 실시는 ‘무공해식품행동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증은 인증기구가 인증 및 인가의 규칙과 절차에 의거, 무공해농산물 품질안전기준에 따라 미가공 또는 1차가공 식용농산물의 산지환경, 농업투입물, 생산과정 및 농산물품질 등 전 부문에 대해 심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합격한 농산물은 무공해농산물 인증증서를 발급해주고 전국 통일의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있다.

농업부는 무공해농산물인증업무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동의를 거쳐 ‘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 무공해농산물인증 업무를 책임 지도록 하였다. ‘무공해농산물관리법’(농업부, 국가품질검사총국 제12호령)에 의거 무공해농산물 인증은 산지인정(產地認定)과 제품인증(產品認證)으로 구분하며, 산지인정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실시하고 제품인증은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데,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증서를 취득한 농산물은 곧 제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통일된 무공해농산물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수립하여 소비 대중이 식별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부와 국가인증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무공해농산물 표지도안을 공고하고, ‘무공해농산물표지관리법’을 공포하며 무공해농산물표지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농업부가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전면 실시하고 건전한 농산물 품질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취한 중대한 조치이다. 현재 일차 무공해농산물 인증이 완료되어 전국통일 표지를 부착하는 규범화된 무공해농산물인증작업이 전면 시행되었다.

농산물품질안전센터는 농업부의 농산물 품질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통일표준, 통일인증, 통일표지, 통일감독, 통일관리의 ‘5통일’(五統一)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전국통일의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 구조를 형성하여 인증작업이 전면적인 규범화, 질서화, 신속화 행동 제도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규범화된 인증작업의 정착을 통해 무공해농산물의 발전 규모와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목표를 예정된 기간 안에 달성하고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자료: http://www.agri.gov.cn/gndt/t20030602_88389.htm에서
(정정길 cgchung@krei.re.kr 02-3299-4368 농정연구센터)

일본, 고급품 중심의 쌀수출 급증

일본의 쌀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2002년도 원조용을 제외한 수출량은 538톤에 달하고 있다. 수량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의 241톤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쌀의 주요 수출국은 대만, 싱가포르, 미국, 홍콩, 중국 등이다. 현재 수출 실적이 좋은 쌀은 고급 품종인 고시히카리가 중심이며, 가격은 kg당 1,000엔에서 1,500엔 정도로서 현지산 쌀에 비해 3-6배 정도 비싸지만 고소득계층과 일본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고급품의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60kg 한 가마니당 판매가격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니이가타산(新潟産) 고시히카리가 약 9만 3,600엔, 대만에서 팔리고 있는 니이가타 우오누마산(魚沼産) 고시히카리가 5만 2,500엔 정도이다. 2003년 5월 현재의 일본 국내 도매가격은 니이가타산 고시히카리가 2만 8,600엔, 우오누마산 고시히카리는 4만 300엔 정도이다.

표 1 수출국별 수출량, 2002년

수출국	수출량(톤)
대만	400
싱가포르	41
미국	40
홍콩	32
중국	8
기타	17
합계	538

표 2 주요 수출업체별 수출사례

수출업체	수출지역	판매방법	가격	비고
전중 (JA全中)	미국	○고급 식품판매점에서 니 이가타 고시히카리를 고 소득층을 대상으로 판매	6달러/파운드 (93,600엔)	○미국산 쌀가격 의 6배
나카무라미곡 (中村米穀)	대만	○우오누마 고시히카리, 니 이가타 고시히카리를 일 본인 거주자에게 소매판매	500元/2kg (52,000엔)	○대만산의 가격 의 3.5배
시마네현 (島根縣)	대만	○저농약 건강쌀 판촉실시	350元/2kg (36,900엔)	○소매판매, 편의 점 주먹김밥용 을 검토

주: (1) 가격의 ()안은 60kg 당으로 환산한 가격, 수량은 정곡기준
(2) 환율은 1달러=120엔, 1元=3.5엔

주요 수출 업체는 전중(全中), 사이타마현(埼玉縣)의 나카무라미곡, 시마네현(島根縣) 등이다. 전중은 주로 미국을 겨냥하여, 고급 음식점에서 니이가타산 고시히카리를 미국의 고소득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나카무라미곡은 2002년에 시장개방을 한 대만을 대상으로 일본 최고의 쌀인 우오누마산 고시히카리를 중심으로 고소득자와 일본인 거주자를 겨냥하여 판촉을 하고 있다.

이상의 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의 고급 쌀은 해외에서 평가를 받고있으며, 최근 쌀 이외의 품목으로는 사과, 배 등의 과일과 쇠고기 등도 주요산지의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이 연합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9년에 쌀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관세화에 의한 쌀 수입은 고액 관세로 인하여 완벽하게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관세액은 쌀 1kg당 341엔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1999년 225톤, 2000년 98톤, 2001년 69톤, 2002년 202톤에 불과하다. MMA를 예외로 한다면, 일본은 2001년이후 쌀 순수출국이라 할 수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아르헨티나, 2003년도 농산물생산 전망

2003년도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생산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밀, 옥수수 생산은 최근 감소하고 있으나, 농산물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대두 생산이 대폭 증가하여 이를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폐소화 평가절하와 미국의 대두생산량 감소로 아르헨티나의 대두수출이 유리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대두생산에는 아직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져 세계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력과 수출력 강화가 주목을 받고있다.

아르헨티나 농목수산물청(SAGPyA) 추계에 따르면, 2001/02 농업년도(7~6월, 이하 같음)의 생산량이 6,961만 톤, 2002/03년에는 7,060만 톤을 기록하여 경제침체가 시작되었던 1998/99년에 비하면 1,000만 톤이 증가하였다. 특히 1996년 이후 지속적 생산증가세를 보이는 대두는 3,400만 톤을 생산,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48.1%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타 주력상품을 보면, 밀은 2001/02년부터 크게 감소하였고, 옥수수는 1999/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아르헨티나의 일간지 Clarin의 추계에 따르면, 이들 농산물 및 그 부산물의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은 2001/02년의 87억 7,000만 달러에서 2002/03년에는 100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대외 공적채무의 상환정지선언이 발표된 2001년 12월 시점에서 아르헨티나 농업계가 안고 있던 채무는 80억 달러였는데, 그 중 25%는 이러한 외화수입으로 상환하게 된다.

표 1 품목별 생산량

단위: 만톤

	1998/99년	1999/00년	2000/01년	2001/02년	2002/03년
대두	2,000	2,020	2,686	3,000	3,400
밀	1,240	1,530	1,536	1,530	1,250
옥수수	1,350	1,678	1,596	1,471	1,500
기타	1,443	1,262	959	960	910
합계	6,033	6,490	6,777	6,961	7,060

주: 2002/03년은 추정치
출처: 아르헨티나 농목수산물식량청

표 2 10,000페소 채무상환에 총당되는 농산물 양

단위: 만톤

	대두	밀	옥수수
2001년 9월	79	119	196
2003년 1월	26	38	79

자료: 아르헨티나 농목수산물식량청

또한 두알데 정권은 2002년 초부터 농산품 수출에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해 대두의 국제시황이 미국의 생산감소 영향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표 3 대두 수출량

단위: 천톤

	2000년	2001년	2002년
중국	2,643	4,899	2,777
태국	411	706	665
스페인	77	351	418
일본	82	94	98
기타	923	1,404	2,213
합계	4,136	7,454	6,171

자료: 아르헨티나 농목수산물식량청

표 4 밀 수출량

단위: 천톤

	2000년	2001년	2002년
브라질	7,111	6,535	5,456
이란	438	1,270	729
페루	529	436	469
일본	0	0	0
기타	2,717	2,342	2,219
합계	10,795	10,583	8,873

자료: 아르헨티나 농목수산물식량청

표 5 옥수수 수출량

단위: 천톤

	2000년	2001년	2002년
칠레	1,055	1,233	932
이집트	1,122	912	930
스페인	1,386	483	841
일본	288	511	263
기타	6,949	7,574	6,335
합계	10,800	10,713	9,301

자료: 아르헨티나 농목수산물식량청

농산물의 경우, 폐소화로 비용을 지불하고, 국외용 판매는 달러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재를 수입품에 의존함으로써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낙농부문 등에 비해 통화 평가절하에 의한 메리트는 크다. 100억 달러의 농산물수출은 20억 달러의 재정수입과 환율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2년초 폐소화 평가절하를 전후하여 채무상환에 충당되는 농산품의 가치는 크게 변했다.

대두, 옥수수의 수확기(4~5월)가 되기 전인 3월, 아르헨티나에서 대규모 농업박람회가 개최되었다. 그 중 산타페 주(대두생산 80% 이상을 차지)에서 개최된 'EXPOCHACRA 2003'에는 농기구, 비료회사 등을 중심으로 500

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아르헨티나 자본의 한 농기구업체(Agro Car)에 따르면, 2002년까지 5년간은 매출이 저조했으나, 올해에는 폐소에 의한 현금 결제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농업기계 17대를 판매했다고 한다.

참고로 2002년 1월~2월에 아르헨티나 전국의 트랙터 판매대수는 21대(2000년 1~2월은 173대)였다. 내용년수가 수십 년이나 되는 농기구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수출을 늘려 외화를 획득한 대규모 농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판매가 대부분인 중소규모 농가는 국내 소비침체에 의한 소득정체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POCHACRA 2003'에 출품한 한 업체는 대두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 미국이 생산정체로 수출량이 일정해지고, 중국은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함께 수출증가가 계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가 세계최대의 수출량을 자랑하는 대두유는 앞으로 중국, 인도, 아프리카, 중동이 수입을 더욱 늘리는 경향에 있다. 옥수수는 중국이 2008년을 전후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미국 다음으로 수출량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향후 10년간 8,500만 톤의 농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그 중 25%에 해당하는 2,000만 톤의 수출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폐소화 평가절하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아르헨티나는 향후 더욱 세계적인 수요증가에 대응한 생산력과 수출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2...>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베트남, 농업생산과 농업구조 개황

1. 농업 개황

인도지나반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토면적은 약 3,300만 ha로 우리나라의 3.3배에 해당한다. 전 국토의 4분의 3이 산악, 구릉, 고원 지대이며,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북고남저의 지형을 띄고 있다. 농경지 면적은 전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740만 ha이다. 베트남의 농경지 면적은 황무지개간과 간척사업 등 정부의 경지면적 확대 노력으로 1980년 660만 ha수준에서 1999년 740만 ha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지의 상당부분이 생산력이 낮은 산악, 구릉 및 고원지역에 분포하나 북부지역의 홍화강 및 남부지역의 메콩강 삼각지(delta)의 경우 농업에 적합한 비옥한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농지 중 관개수리면적은 41%수준으로 동남아 인접국에 비해 하부구조개선에 비교적 높은 투자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농지의 80%이상이 주곡인 쌀 생산을 위한 벼농사 경작지로 태국에 이어 최근 세계 제 2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베트남의 총인구는 약 7,800만명이며, 그 중 농가인구는 6,200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80%가량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은 전체 고용 인구의 69%가 농업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라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전체 인구에서 농가 및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거

표 1 농지이용 현황

단위: 천 ha, %

	1980	1990	1995	1998	1999	2000
총면적	32,549	32,549	32,549	32,549	32,549	32,549
농지면적	6,570 (20.2)	6,384 (19.6)	6,757 (20.8)	7,250 (22.3)	7,350 (22.6)	-
관개수리면적	1,700	2,900	3,000	3,000	3,000	-

주: () 안은 총면적 대비 비율임.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Land Use.

ESCAP, Statistics Division, Asia and the Pacific in Figures 2001.

표 2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단위: 백만 명, %

	1980	1990	1995	1998	1999	2000
총인구	53.7	66.2	72.0	75.5	76.6	77.7
농가인구	43.3 (80.7)	52.9 (79.9)	57.8 (80.3)	60.4 (80.0)	58.4 (76.3)	62.4 (80.3)
농업취업인구	21.6	30.3	34.6	37.9	38.5	-
농업종사자	15.1 (70.0)	21.7 (71.6)	24.1 (69.7)	26.1 (68.9)	26.6 (69.1)	-

주: () 안은 총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자료: ESCAP Statistics Division, Asia and the Pacific in Figures 2001.

의 일정수준에서 변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베트남 국민 경제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농업과 농촌경제의 활력 유지가 중요시되고 있다.

2000년도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약 444조 1,000억 동(Dong)(320억US\$ 상당)수준이며, 그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수준이다. 농업 GDP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 등 여타부문의 상대적 고도 성장으로 인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GDP의 비중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1990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함께 공업화 추진

표 3 농업생산액 (GDP) 변화 추이

단위: 10억 Dong, %

	1990	1995	2000
전체 GDP	41,955	228,892	444,139
농업 GDP	16,252(38.7)	62,219(27.2)	107,913(24.3)

주: GDP는 명목치, () 안은 전체 GDP에 대비한 농업 GDP의 비율임.

자료: www.adb.org(Key Indicator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전략이 주요 요인이다.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 39%수준에서 2000년에 24%까지 낮아졌으나 아직도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농업생산

베트남의 전체 농림수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이 85%, 임업이 4%, 수산업이 11%가량이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쌀, 옥수수, 감자, 카사바, 커피, 고무, 차, 땅콩 등 작물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가량이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가량이다. 농작물 중에서 쌀, 커피, 차, 땅콩이 4대 주요 생산작물이며, 특히 쌀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50%를 차지하는 기간 생산작물이다.

이외에도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아열대성 과실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농업생산지수 측면에서 베트남의 농업생산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농업생산은 식량작물, 비식량작물, 축산물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생산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나 식량작물이나 축산물에 비해 비식량작물의 생산 증가추세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1989-91년을 100으로 할 때, 2000년도 비식량작물의 생산은 10년간 466%성장하였으며, 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생산증가는 각각 59.7%와 55.5%였다.

비식량작물 생산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커피, 고무, 차, 사탕수수, 후추 등 수출상품의 재배 면적과 생산, 그리고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농업부문의 성장은 베트남정부의 주요 정책 관심사항의 하나로, 최근 농업 및 농촌 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연평균 국가재원의 15~17%에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전략 품목으로 선정한 쌀, 커피, 고무, 차, 열대과실, 사탕수수 등의 생산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총농업생산지수	63.5	82.4	99.9	129.7	150.8	162.0	169.5
- 식량	63.7	82.4	99.8	128.1	146.2	155.5	159.7
- 비식량	59.2	82.1	102.4	179.1	285.1	356.5	465.8
- 축산물	45.8	80.7	101.2	132.0	157.0	153.3	155.5

주: 각 생산지수는 1989 - 1991 = 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al Production Indices. ESCAP Statistics Division, Asia and the Pacific in Figures 2001.

표 5 주요 농산물 생산 동향

단위: 1,000 MT

	1985	1990	1995	2000
쌀	15,875	19,225	24,964	32,554
코코넛	612	894	1,165	968
옥수수	587	671	1,177	1,930
고무	48	58	125	292
커피	12	59	218	698
홍차	28	32	40	77

자료: www.adb.org (Key Indicator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3. 농산물 소비

베트남 국민의 연간 1인당 식품 소비량은 모든 분야에 걸쳐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 266kg 수준에서 2000년 326kg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식품섭취 유형에서 쌀, 옥수수 등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 가량으로 아직도 곡물류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주요 품목군별로 식품소비패턴에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육류, 우유, 채소류, 유지작물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품목의 소비 증가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식품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직도, 육류, 우유 등 축산물과 낙농품, 그리고 채소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요 농작물의 국내 자급률 측면을 보면 우유 등 낙농품과 과일류를 제외하고는 100%이상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쌀 등 곡물류의 자급률은 125%로 충분한 수출여력을 가지고 있다.

표 6 식품소비량과 식량자급률 변화 추이

단위: kg, %

	1인간 연간 소비량					자급률				
	1980	1985	1990	1995	2000	1980	1985	1990	1995	2000
곡물	157.7	171.3	165.2	175.4	185.4	86.9	96.4	106.1	113.9	124.6
유지작물	1.9	2.6	1.9	4.6	3.7	103.7	121.4	110.4	112.8	104.6
채소류	42.0	41.6	49.9	57.4	74.9	100.2	100.0	100.4	100.2	100.0
과일류	43.3	42.1	43.0	48.4	47.7	101.2	101.4	102.1	100.2	98.8
육류	9.4	14.4	16.0	18.9	24.3	99.8	101.1	101.8	100.5	103.9
우유	1.6	1.2	1.3	3.7	4.6	46.6	76.1	66.7	24.5	23.0
어류	10.5	12.7	12.8	17.8	6.2	100.2	104.1	106.8	107.6	100.0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Food Balance Sheet.

4. 농산물 무역

2000년 기준 베트남의 전체 교역규모는 약 295억불 수준이며, 이 중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 수준인 35억불수준이다. 2000년도 농산물 수출액은 약 22억불, 농산물 수입액은 대략 14억불 수준으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8억불 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 베트남 전체 무역흑자의 92%가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로 이루어졌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농산물 순수출국이었으나 베트남 전쟁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1970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농산물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기조 변경, 그리고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대로 농산물 수출국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농산물 수출은 자국산 농업생산물의 수요와 판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흑자는 베트남 경제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표 7 농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million US\$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전체 교역	수출액	339	699	2,404	5,449	9,361	11,540	14,308
	수입액	1,314	1,857	2,752	8,155	11,500	11,622	15,200
	무역수지	-975	-1,158	-348	-2,706	2,138	82	892
농산물 교역	수출액	99	212	754	1,632	2,440	2,446	2,176
	수입액	327	175	236	1,153	1,078	1,102	1,355
	무역수지	-228	37	518	479	1,362	1,344	821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으나 아직도 베트남 전체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쌀, 땅콩 등 너트류, 커피, 고무, 코코넛, 후추, 차, 열대과실 등이며, 주요 수입 농산물은 면화, 우유 등 낙농제품, 밀가루, 맥아, 가죽 및 피혁 등이다.

(임정빈 jeongbin@nongae.gsnu.ac.kr 055-751-5455 경상대학교)



국제기구 논의동향

최근 WTO/DDA 농업협상 동향

최근 WTO/DDA 농업협상 동향

1. 서론

DDA 농업협상은 두 차례에 걸친 하빈슨 의장의 세부원칙초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말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농산물 관세 및 농업보조금 감축의 세부원칙(modality)을 도출하는데 실패하여 당초 일정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이어 7월까지 매달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제네바 현지에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비공식협의를 계속되었다. 특히 지난 4월 2일~4일까지 개최된 WTO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는 당초 일정대로 2005년 1월 1일까지 도하개발아젠다(DDA) 전체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

결국 최근의 DDA 농업협상 논의 움직임은 오는 9월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개최될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의 논의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난 6월과 7월에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9월 제5차 칸쿤(Cancun) 각료회의에서 진전될 농업협상에 관해 전망하고자 한다.

2. 6월 협상동향

2.1. 종합평가

지난 6월 협상에서는 참여 회원국 대부분이 기존의 자국입장을 반복하는 등 협상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우대 조치인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 및 특별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와의 연계방안에 관한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양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협상경과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① 관세감축방식으로써 UR방식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② 이 과정에서 SP 개념 자체가 선진국에 의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2.2. 관세감축방식에 관한 논의

당초 관세감축방식은 UR 방식과 스위스 방식이 대립하는 가운데 의장 초안에서 관세수준별 차등감축방식(band approach)이 제시됨에 따라 관세감축방식의 최종 타결방향은 양자의 결합형태인 밴드 방식을 중심으로 감축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지난 2월과 3월 농업협상에서 나타난 회원국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밴드방식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감축률이 도하(Doha) 각료회의의 위임사항(mandate)을 만족시키는데 부족한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내심 어느 정도 만족하여 향후 협상의 기초로 삼는다는데 대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반면 밴드방식에 대해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감축률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입장

을 나타냈다.

6월 농업협상 논의에서 다수 개도국들이 관세감축방식과 관련하여 종전의 중립적 또는 Swiss 방식의 암묵적인 동조 내지는 지지입장에서 UR 방식지지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감축방식으로서 UR 방식이 회원국 다수의 의견으로 힘을 더해가고 있다. 아직 협상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정도의 수는 아니지만(현재 공식적으로 UR 방식지지를 표명한 회원국은 NTC 그룹, EU 15개국을 비롯하여 모두 77개국임), 관세감축방식 논의에서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Swiss 방식 주장 회원국들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UR 방식으로의 합의 가능성이 이전 보다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UR 방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고율관세(tariff peak)와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3. 관세감축방식과 특별품목 및 특별세이프가드의 연계 가능성

현재 형성되고 있는 관세감축방식으로서 UR 방식으로의 세력 형성이 선진 수입국을 중심으로 은연중에 특별품목의 삭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UR 방식으로의 세력 확대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감축방식으로서 UR 방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NTC 그룹 국가들은 특별품목에 대해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UR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특별품목의 삭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즉, 비교역적 관심사항(Non trade concern, NTC)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flexible) UR 방식이 필수적인데 여기다가 특별품목 및 특별세이프가드까지 주장할 경우 농산물 수출국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수출국 또한 UR 방식에다 특별품목 및 특별세이프가드까지 추가하는 것은 협상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NTC를 위해서 개도국에게 과도한 신축성을 중복하여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R 방식으로 타결될 경우 수출국들이 특별품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 NTC 국가들은 특별품목을 양보할 경우 수출국들이 UR 방식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감축방식으로서 UR 방식에 기초한 관세감축률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EU와 일본이 UR 방식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도국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선진 NTC 회원국들은 UR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특별품목을 포기해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UR 방식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품목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향후 수출개도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별품목이 없는 UR 방식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모리셔스는 특별품목과 UR 방식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6월 농업협상의 분위기로 판단할 때 관세감축방식이 UR 방식으로 타결될 경우 특별품목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NTC 그룹은 UR 방식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선진 NTC와 개도 NTC 그룹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지난 6월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세력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선진국들의 압력에 서서히 약화 내지는 분열되고 있는 조짐을 보였다. 개도국의 리더로서 특별품목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인도 역시 UR 방식에 특별세이프가드와 특별품목을 연계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나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6월 협상에서 발언 수위를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결국 협상이 진행될수록 개도국들은 DDA의 취지와는 달리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는 과거의 다자간협상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을 사시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EU의 합의를 내심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한편 UR 방식을 지지하는 개도국 대부분은 특별품목을 바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발언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으며, 결국 힘의 한계로 인해서 EU

의 의도대로 특별품목이 없는 UR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른 한편 케언즈(Cairns) 그룹내 개도 케언즈간에도 특별품목에 관해 의견을 달리 하는 등 분열조짐을 보였다. 수출비중이 높은 수출중심의 개도 케언즈(태국, 파키스탄, 헝가리, 콜롬비아, 브라질 등)는 특별품목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 케언즈(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남미 일부 등)는 엄격한 기준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미국은 특별품목에 관한 개념을 인정하지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특별품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6월 회의에서 간접적으로 의도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은 과거의 UR과는 달리 이번 DDA에서는 예외적 조항을 만들어 내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아래 설령 불가피하게 특별품목을 인정하게 된다고 해도 특별품목의 혜택을 매우 한정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였으며, 최근 인도와의 양자협상에서 특별품목이라도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TRQ)은 증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로 인해서 특별품목에 의존해 시장개방 확대에 다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스위스방식에 기초해 수출증대를 기대했던 대다수 수출 개도국들이 관세감축방식에 관한 입장을 정립하는데 혼란을 가져왔다. 선진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대다수 수출 개도국들은 자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우려하여 특별품목이 없다면 차라리 UR 방식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고, EU와 일본도 바로 이점을 노리고 수출개도국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행 의장초안에서 특별품목을 삭제하는데 있어서는 UR 방식을 주장하는 수입 선진국과, 개도국 시장개방 확대 및 수출확대를 노리는 수출선진국간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EU 등 협상의 핵심 선진 4개국(Quad)간의 이해 일치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7월 협상 동향

3.1. 종합평가

6월에 이어 7월 농업협상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참가 회원국 대부분이 기존 자국의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쳐 9월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이 DDA 농업협상에서 EU의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되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상당한 감축, 수출보조 철폐를 목적으로 한 실질적 감축,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등 농업협상에 관한 도하 각료선언의 목적에 충실한 모델리티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각국 농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균형잡힌 모델리티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개도국은 개도국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와 관련하여 특별품목과 특별세이프가드가 모델리티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9월 칸쿤 각료회의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국과 EU의 접촉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고, 둘째는 이와 관련하여 핵심쟁점인 관세감축공식과 관련하여 상호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모델리티가 도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분명 이전 보다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7월 28-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소규모 각료회의 논의 결과와 8월 중순 이후 9월초까지 미국과 EU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월말이면 칸쿤 각료회의 전망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로 판단된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는 과거 시애틀 각료회의와는 달리 어떠한 형태로든 각료들의 합의문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합의문에 담겨질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3.2. 주요 논의 내용 및 미국과 EU의 절충 가능성 전망

3.2.1. 국내보조 분야

이번 농업협상 참가 회원국 대부분은 EU가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에 합의함에 따라 EU의 국내보조분야에서 의장초안의 내용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U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U가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경우 수출보조나 시장접근분야에서 미국과 주고받기식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2.2. 수출경쟁분야

현재 EU는 의장초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출보조 철폐를 당장 수용하기에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출보조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EU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는 미국이 주로 활용하는 수출신용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케언즈그룹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EU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수출신용과 수출보조 분야는 미국과 EU간에 주고받기식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일 뿐만 아니라, 수출보조와 국내보조간에도 이러한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2.3. 시장접근분야

WTO 농업협상에 있어서 미국과 EU간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시장접근이다. 관세감축에 대해서 고율관세(tariff peak)와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화공식 또는 의장의 관세수준별 감축방식을 주장하는 미국과 UR방식을 주장하는 EU간에 팽팽한 대립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EU는 NTC의 하나로서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GI)와 labelling 문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GI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케언즈 등 수출국들은 당초 도하 각료회의 위임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대다수 회원국들은 미국과 EU가 타협할 가능성이 짙은 분야는 관세감축과 관련된 시장접근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3. 미국과 EU의 절충안 방향

미국은 오는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모델리티의 도출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것으로 감지된다. 반면 EU는 수세적 입장에서 UR방식과 지리적 표시 및 수출보조에서 최대한 포괄적 타협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감축에 있어 미국의 기본입장은 야심적인 수준(ambitious reduction level)의 관세감축이며, 의장초안의 특별품목과 같이 예외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 예외조항 대신 일종의 융통성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향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야심적인 수준의 관세감축이 반드시 조화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을 의미는 것은 아니며, 의장초안의 관세감축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EU는 지속적으로 UR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중간에 개최된 한·미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의장초안에서 제시하는 특별품목을 확실한 예외조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TRQ 증량 없이 자기 선언방식의 특별품목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EU도 UR 방식에다 특별세이프 가드와 특별품목까지 추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U가 제시할 포괄적(comprehensive) 타협안은 시장개방안에 지리적 표시, labelling, 식품안전(food safety)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협상 절충안은 미국안에 기초하여 ① 의장초안의 band approach를 따르되 특별품목을 배제한 일부 민감 품목에 융통성을 인정하고, EU가 주장하는 NTC 가운데 일부분(특히 지리적 표시)을 포괄하는 것 혹은 EU안에 기초하여 ② UR방식에서 평균 및 최소감축률을 상향조정된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관세 감축률이 상당히 상향조정되지 않는 한 고율관세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UR방식을 따르되 관세상한(ceiling)을 도입하는 경우가 절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인다.

위의 두 가지 절충안은 각각 미국과 EU의 대내적인 입장과 명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의장초안의 관세감축방식은 협상에서 관세감축에 중점을 두어온 미국에게 명분을 주는 반면, EU, 스위스, 일본 등은 일부 민감 품목에 한하여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타협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UR방식을 따를 경우 평균 감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관세상한이 도입될 경우 미국으로서도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협상의 핵심은 감축률과 관세상한의 수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위의 두 가지 절충안 모두가 현행 의장초안에서 제시하는 특별품목을 암묵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개도국의 반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으로 부각될 수 있다.

4. 칸쿤 각료회의의 전망

지난 6월 20일 개최된 이집트 소규모 각료회의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오는 9월 칸쿤에서 모델리티가 합의 도출되지 않을 경우 DDA 자체의 표류는 물론 내년 4월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EU 집행위원회의 경질 등으로 인해 향후 2-3년내 DDA 타결이 어려울 것임으로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입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모델리티 합의도출이 DDA 전체 일정상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EU 역시 구체적 발언은 없으나 내심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선진국의 UR 농업협상 결과 이행이 동결된 상태에서 오는 칸쿤 각료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DDA 타결이 2-3년 지연될 경우 WTO 자체의 무용론이 또 다시 대두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과거 시애틀 각료회의와는 달리 어떠한 형태로든 문서화된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문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① 핵심내용이 빠진 채 향후 협상의 지침(guideline)만 도출되거나, 혹은 ②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내용이 포함된 모델리티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핵심내용이 빠진 협상지침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이행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과 사무국에서는 후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의장은 최소한의 이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수치만을 각료회의 모델리티안에 상정하고, 각료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회의를 이끌어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칸쿤에서는 이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수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정확히는 7월말

개최될 캐나다 몬트리올 소규모 각료회의와 8월말까지의 미국과 EU의 절충안에 따라 그 이상의 모델리티 도출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7)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7)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7월 11일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전망(7월 1일 현재)에 의하면, 2003/04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8억 6,202만톤, 소비량은 0.7% 증가한 19억 2,124만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14.8% 감소한 3억 5,250만톤, 기말재고율은 3.3% 포인트 감소한 18.3%로 전망하고 있다.

1. 전체 곡물

2003/04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8억 6,20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5,140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곡물인 쌀을 비롯하여 옥수수 등 기타잡곡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3/04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1,172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2억 7,374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3/04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19억 2,12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3/04년도에도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6	2003.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72.11	1,810.62	1,858.51	1,862.02	2.6	0.2
공 급 량	2,408.35	2,319.38	2,272.17	2,273.74	△2.0	0.1
소 비 량	1,899.59	1,907.66	1,921.31	1,921.24	0.7	0.0
교 역 량	238.58	230.50	226.31	225.59	△1.8	△0.3
기말재고량	508.76	411.72	350.86	352.50	△14.8	0.5
기말재고율	26.8	21.6	18.3	18.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0, July 11, 2003.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 대비 1.8% 줄어들어 2억 2,55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5,92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3/04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4.8% 감소한 3억 5,250만 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2/03년도 21.6%에서 18.3%로 3.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쌀

2003/04년도 쌀 생산량은 2002/03년 보다 3.3% 증가한 3억 9,408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04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4억 1,217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약 102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6	2003.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8.61	381.40	393.73	394.08	3.3	0.1
공 급 량	546.64	517.77	502.09	500.71	△3.3	△0.3
소 비 량	410.26	411.15	410.00	412.17	0.2	0.5
교 역 량	27.03	27.32	25.50	25.38	△7.1	△0.5
기말재고량	136.37	106.63	92.08	88.55	△17.0	△3.8
기말재고율	33.2	25.9	22.5	21.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0, July 11, 2003.

2003/04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2,53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미국의 수출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7.0%가 줄어든 8,855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04년도 기말재고율은 21.5%로 2002/03년도의 25.9% 보다 약 4.4%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 소맥

2003/04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5억 6,030만 톤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3/04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2/03년 5억 9,689만 톤보다 약 1,300만 톤 감소한 5억 8,412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2001/02년 1억 804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3/04년에는 9,892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6	2003.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1.08	563.83	561.45	560.30	△0.6	△0.2
공 급 량	781.73	761.00	726.54	724.41	△4.8	△0.3
소 비 량	584.57	596.89	589.93	584.12	△2.1	△1.0
교 역 량	108.04	102.14	99.32	98.92	△3.2	△0.4
기말재고량	197.17	164.11	136.61	140.29	△14.5	2.7
기말재고율	33.7	27.5	23.2	24.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0, July 11, 2003.

비율도 17.7%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3/04년 기말재고량은 1억 4,029만 톤으로 전년보다 14.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과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고,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7.5%에서 24.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재고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옥수수

2003/04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2,561만 톤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아르헨티나, EU,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3/04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6억 3,69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1,131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6	2003.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99.01	599.02	621.73	625.61	4.4	0.6
공 급 량	750.62	727.46	717.48	722.43	△0.7	0.7
소 비 량	622.18	630.64	634.17	636.92	1.0	0.4
교 역 량	75.99	76.08	75.54	74.99	△1.4	△0.7
기말재고량	128.44	96.82	83.31	85.51	△11.7	2.6
기말재고율	20.6	15.4	13.1	13.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0, July 11, 2003.

2003/04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1.4% 감소한 7,499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2.7%, 16.0%로 이들 두 국가가 약 7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04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7% 줄어든 8,55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1,131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중국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3/04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2.0% 포인트 줄어든 13.4%가 될 전망이다.

5. 대두

2003/04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753만 톤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5.5% 늘어난 2억 29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457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6,376만 톤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2.3%, 브라질이 34.5%, 아르헨티나가 15.5%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3,980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488만 톤과 비교하여 14.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도보다 약 1.5% 포인트 높은 19.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6	2003.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4.42	195.82	194.60	207.53	6.0	6.6
공 급 량	2150	227.84	226.61	242.41	6.4	7.0
소 비 량	183.97	192.34	194.35	202.96	5.5	4.4
교 역 량	53.37	62.70	63.52	63.76	1.7	0.4
기말재고량	32.02	34.88	31.84	39.80	14.1	25.0
기말재고율	17.4	18.1	16.4	19.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0, July 11, 2003.

표 6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6	2003.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46.64	517.77	502.09	500.71	△3.3	△0.3
기초재고량	148.03	136.37	108.36	106.63	△21.8	△1.6
생산량	398.61	381.40	393.73	394.08	3.3	0.1
미국	6.74	6.51	6.23	6.23	△4.3	0.0
태국	17.50	17.12	-	17.80	4.0	-
베트남	21.04	21.09	-	21.00	△0.4	-
인도네시아	33.09	33.20	-	33.30	0.3	-
중국	124.31	122.18	-	120.00	△1.8	-
일본	8.24	8.09	-	8.00	△1.1	-
수입량	25.75	25.88	25.00	25.13	△2.9	0.5
인도네시아	3.50	3.50	-	3.50	0.0	-
중국	0.31	0.30	-	0.30	0.0	-
일본	0.66	0.70	-	0.70	0.0	-
소비량	410.26	411.15	410.00	412.17	0.2	0.5
미국	3.87	3.85	3.94	3.95	2.6	0.3
태국	9.77	9.92	-	10.00	0.8	-
베트남	17.40	17.55	-	17.70	0.9	-
인도네시아	36.36	36.79	-	36.95	0.4	-
중국	134.58	134.80	-	135.00	0.1	-
일본	9.00	8.98	-	8.66	△3.6	-
수출량	27.03	27.32	25.50	25.38	△7.1	△0.5
미국	2.96	3.70	2.75	2.72	△26.5	△1.1
태국	7.25	7.50	-	8.00	6.7	-
베트남	3.25	4.00	-	4.00	0.0	-
기말재고량	136.37	106.63	92.08	88.55	△17.0	△3.8
미국	1.22	0.64	0.71	0.55	△14.1	△22.5
태국	2.40	2.10	-	1.90	△9.5	-
인도네시아	4.84	4.75	-	4.60	△3.2	-
중국	82.17	67.60	-	50.40	△25.4	-
일본	1.52	1.13	-	0.97	△14.2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0, July 11, 2003.

표 7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6	2003.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81.73	761.00	726.54	724.41	△4.8	△0.31
기초재고량	200.65	197.17	165.09	164.11	△16.8	△0.6
생산량	581.08	563.83	561.45	560.30	△0.6	△0.2
미국	53.26	43.99	59.23	62.89	43.0	6.2
호주	24.85	9.39	23.00	23.00	144.9	0.0
캐나다	20.57	15.69	24.00	25.00	59.3	4.2
EU15	91.20	103.32	101.00	99.50	△3.7	△1.5
중국	93.87	90.29	87.00	87.00	△3.6	0.0
러시아	46.90	50.55	36.00	34.00	△32.7	△5.6
수입량	108.45	103.76	96.28	95.98	△7.5	△0.3
EU15	9.82	11.00	5.00	5.00	△54.5	0.0
브라질	7.01	6.70	6.50	6.50	△3.0	0.0
북아프리카	17.48	17.40	13.70	13.20	△24.1	△3.6
파키스탄	0.24	0.25	0.25	0.25	0.0	0.0
인도	0.03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0.63	0.30	1.00	1.00	233.3	0.0
소비량	584.57	596.89	589.93	584.12	△2.1	△1.0
미국	32.70	30.48	32.39	32.39	6.3	0.0
EU15	91.10	95.10	95.20	94.50	△0.6	△0.7
중국	108.74	105.20	104.50	104.50	△0.7	0.0
파키스탄	19.80	18.60	18.85	18.75	0.8	△0.5
러시아	38.08	40.60	37.50	35.50	△12.6	△5.3
수출량	108.04	102.14	99.32	98.92	△3.2	△0.4
미국	26.19	23.41	25.86	26.54	13.4	2.6
캐나다	16.27	8.00	14.50	15.00	87.5	3.4
EU15	11.49	15.50	14.50	14.00	△9.7	△3.4
기말재고량	197.17	164.11	136.61	140.29	△14.5	2.7
미국	21.15	13.38	16.44	20.08	50.1	22.1
EU15	8.18	11.90	8.20	7.90	△33.6	△3.7
중국	76.59	60.53	43.88	43.73	△27.8	△0.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0, July 11, 2003.

표 8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6	2003.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50.62	727.46	717.48	722.43	△0.7	0.7
기초재고량	151.61	128.44	95.75	96.82	△24.6	1.1
생산량	599.01	599.02	621.73	625.61	4.4	0.6
미국	241.49	228.80	255.54	260.87	14.0	2.1
아르헨티나	14.70	15.50	16.00	16.00	3.2	0.0
EU15	39.69	39.44	40.00	40.00	1.4	0.0
멕시코	20.40	18.80	19.00	19.00	1.1	0.0
동남아시아	15.07	14.67	15.27	15.57	6.1	2.0
중국	114.09	121.30	118.00	118.00	△2.7	0.0
수입량	74.28	74.03	74.76	74.81	1.1	0.1
EU15	2.91	3.00	3.00	3.00	0.0	0.0
일본	16.40	16.00	15.50	15.50	△3.1	0.0
멕시코	4.08	5.50	7.00	6.50	18.2	△7.1
동남아시아	3.82	4.11	4.36	4.16	1.2	△4.6
한국	8.62	9.00	9.50	9.50	5.6	0.0
소비량	622.18	630.64	634.17	636.92	1.0	0.4
미국	201.05	203.46	202.57	205.75	1.1	1.6
EU15	42.40	41.60	42.20	42.20	1.4	0.0
일본	16.30	16.20	15.50	15.50	△4.3	0.0
멕시코	23.60	24.70	25.80	25.70	4.0	△0.4
동남아시아	18.82	18.74	19.30	19.40	3.5	0.5
한국	8.74	8.97	9.57	9.57	6.7	0.0
중국	123.30	126.50	128.10	128.10	1.3	0.0
수출량	75.99	76.08	75.54	74.99	△1.4	△0.7
미국	48.38	40.64	46.99	46.99	15.6	0.0
아르헨티나	10.80	12.00	12.00	12.00	0.0	0.0
중국	8.61	13.50	8.00	8.00	△40.7	0.0
기말재고량	128.44	96.82	83.31	85.51	△11.7	2.6
미국	40.55	25.63	33.76	34.01	32.7	0.7
아르헨티나	0.39	0.61	0.62	0.62	1.6	0.0
EU15	3.87	4.51	5.11	5.11	13.3	0.0
중국	63.40	44.71	26.71	26.71	△40.3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0, July 11, 2003.

표 9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6	2003.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15.00	227.84	226.61	242.41	6.4	7.0
기초재고량	30.58	32.02	32.01	34.88	8.9	9.0
생산량	184.42	195.82	194.60	207.53	6.0	6.6
미국	78.67	74.29	74.29	78.52	5.7	5.7
아르헨티나	30.00	35.50	35.00	37.00	4.2	5.7
브라질	43.50	52.50	52.00	56.00	6.7	7.7
중국	15.41	16.51	16.51	18.78	13.7	13.7
수입량	54.35	62.08	63.10	64.10	3.3	1.6
EU15	18.30	17.40	20.00	18.30	5.2	△8.5
일본	5.02	5.15	5.15	5.05	△1.9	△1.9
중국	10.39	18.20	17.00	18.50	1.6	8.8
소비량	183.97	192.34	194.35	202.96	5.5	4.4
미국	50.87	47.81	48.78	48.84	2.2	0.1
아르헨티나	22.06	25.69	25.79	26.84	4.5	4.1
브라질	26.91	30.66	30.99	33.22	8.3	7.2
EU15	19.23	18.41	19.17	19.05	3.5	△0.6
일본	5.21	5.40	5.40	5.34	△1.1	△1.1
중국	28.31	32.94	33.15	35.66	8.3	7.6
수출량	53.37	62.70	63.52	63.76	1.7	0.4
미국	28.95	28.03	27.49	26.94	△3.9	△2.0
아르헨티나	6.01	9.30	9.10	9.90	6.5	8.8
브라질	15.00	20.93	20.80	22.01	5.2	5.8
기말재고량	32.02	34.88	31.84	39.80	14.1	25.0
미국	5.66	4.22	3.80	7.07	67.5	86.1
아르헨티나	10.16	11.08	10.67	11.74	6.0	10.0
브라질	11.07	13.07	12.28	14.95	14.4	21.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0, July 11, 2003.

표 10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백만 톤, %

구 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80/81	1,446.90	1,642.30	1,463.20	215.20	190.90	13.0
1981/82	1,496.10	1,687.00	1,462.80	209.70	229.00	15.7
1982/83	1,547.70	1,776.70	1,499.90	200.60	354.70	23.6
1983/84	1,485.30	1,840.00	1,537.80	207.80	302.40	19.7
1984/85	1,646.60	1,949.00	1,585.80	218.70	364.30	23.0
1985/86	1,664.10	2,028.40	1,596.00	180.60	433.30	27.1
1986/87	1,663.20	2,096.50	1,633.00	186.50	465.20	28.5
1987/88	1,594.70	2,059.90	1,652.10	211.60	410.60	24.9
1988/89	1,546.10	1,956.70	1,637.00	211.80	319.40	19.5
1989/90	1,670.80	1,990.20	1,688.60	220.10	296.60	17.6
1990/91	1,768.90	2,065.50	1,726.50	202.10	338.90	19.6
1991/92	1,708.00	2,046.90	1,722.00	221.10	325.00	18.9
1992/93	1,789.60	2,114.60	1,751.60	220.10	362.80	20.7
1993/94	1,712.40	2,075.20	1,753.30	204.40	473.10	27.0
1994/95	1,758.90	2,232.00	1,772.00	220.60	459.80	25.9
1995/96	1,712.20	2,172.00	1,761.60	206.70	410.60	23.3
1996/97	1,870.90	2,281.50	1,827.80	213.20	450.60	24.7
1997/98	1,880.80	2,331.40	1,835.90	217.50	495.30	27.0
1998/99	1,872.70	2,368.00	1,839.70	223.40	528.40	28.7
1999/00	1,871.60	2,400.00	1,869.70	240.10	530.40	28.4
2000/01	1,839.80	2,370.20	1,868.30	231.60	501.90	26.9
2001/02	1,871.11	2,408.35	1,899.59	238.58	508.76	26.8
2002/03	1,810.62	2,319.38	1,907.66	230.50	411.72	21.6
2003/04	1,862.02	2,273.74	1,921.24	225.59	352.50	18.3

주: 2002/03년은 추정치, 2003/04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Agricultural Outlook, 1985~2003(1980/81~2000/01)

(김혜영 hykim@krei.re.kr 02-3299-4269 농산업경제연구센터)



통 계 자 료

- 표 1 세계 쌀 통계(전체)
- 표 2 세계 쌀 통계(아시아)
- 표 3 세계 쌀 통계(북미)
- 표 4 세계 쌀 통계(카리브해)
- 표 5 세계 쌀 통계(중미)
- 표 6 세계 쌀 통계(남미)
- 표 7 세계 쌀 통계(유럽연합)
- 표 8 세계 쌀 통계(동부유럽)
- 표 9 세계 쌀 통계(구 소련)
- 표 10 세계 쌀 통계(아프리카)
- 표 11 세계 쌀 통계(중동)
- 표 12 세계 쌀 통계(오세아니아)

표 1 세계 쌀 통계(전체)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132,654	213,002	8,465	7,729	209,866	28,827	101.5
1971	134,825	215,770	8,446	8,477	215,918	28,710	99.9
1972	132,665	208,935	8,496	7,976	212,974	24,151	98.1
1973	136,288	227,555	7,714	7,896	222,575	29,313	102.2
1974	137,796	225,662	7,400	7,690	226,505	28,760	99.6
1975	142,887	243,144	7,838	7,861	232,537	39,390	104.6
1976	141,429	235,807	9,831	8,608	235,134	38,840	100.3
1977	143,409	250,588	9,426	9,301	244,517	44,786	102.5
1978	143,640	262,370	11,486	11,606	252,429	54,847	103.9
1979	141,230	256,824	12,034	11,227	256,810	54,047	100.0
1980	144,404	269,956	12,377	11,259	270,153	52,607	99.9
1981	144,376	277,885	11,713	10,232	278,454	50,502	99.8
1982	140,661	285,019	10,728	9,883	277,883	56,777	102.6
1983	144,608	306,924	12,520	10,706	292,571	69,316	104.9
1984	144,145	316,737	10,740	10,615	298,266	87,662	106.2
1985	144,823	317,964	11,485	10,311	306,762	97,690	103.7
1986	144,815	316,023	13,063	10,684	308,030	103,304	102.6
1987	141,689	315,231	11,572	10,448	312,161	105,250	101.0
1988	146,458	332,173	14,015	11,699	323,442	111,665	102.7
1989	147,633	345,314	11,484	10,606	335,399	120,702	103.0
1990	146,731	350,981	12,115	10,584	342,455	127,697	102.5
1991	147,473	353,278	14,453	12,033	350,463	128,092	100.8
1992	146,565	354,107	14,876	12,954	355,130	125,147	99.7
1993	145,210	354,919	15,857	16,139	358,738	121,610	98.9
1994	147,393	363,628	21,093	19,386	363,747	119,784	100.0
1995	148,036	370,928	19,820	18,136	369,596	119,432	100.4
1996	149,840	380,359	19,110	16,887	376,520	121,048	101.0
1997	151,083	386,782	26,646	24,236	377,166	128,254	102.5
1998	152,513	394,363	25,757	25,197	386,585	135,472	102.0
1999	155,140	408,674	22,974	20,296	395,833	145,635	103.2
2000	151,457	397,938	24,167	21,796	393,176	148,026	101.2
2001	150,884	398,609	27,026	25,745	408,981	136,373	97.5
2002	144,888	381,405	27,318	25,878	409,708	106,630	93.1
2003	149,910	394,081	25,379	25,131	411,917	88,546	95.7

표 2 세계 쌀 통계(아시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120,382	195,898	5,275	4,354	191,698	26,929	102.2
1971	122,430	197,697	5,031	5,258	198,139	26,714	99.8
1972	120,356	190,701	5,585	4,948	194,113	22,665	98.2
1973	123,782	208,611	4,877	4,281	203,219	27,461	102.7
1974	123,938	205,217	3,814	4,118	206,657	26,325	99.3
1975	127,731	220,279	4,479	4,308	211,462	34,971	104.2
1976	127,169	213,862	5,984	3,889	212,435	34,303	100.7
1977	129,182	229,238	5,327	3,812	220,993	41,033	103.7
1978	128,794	239,621	6,955	4,273	227,205	50,767	105.5
1979	125,357	231,813	7,671	4,963	230,371	49,501	100.6
1980	128,515	244,935	7,945	4,224	241,837	48,811	101.3
1981	128,304	250,943	6,976	2,332	249,822	45,245	100.4
1982	125,520	259,970	7,151	3,020	249,691	51,393	104.1
1983	129,749	283,240	8,638	3,260	264,023	65,232	107.3
1984	129,248	291,132	7,094	2,758	269,636	82,392	108.0
1985	129,145	291,146	7,936	2,502	277,485	90,619	104.9
1986	128,735	288,474	8,558	2,257	276,210	96,582	104.4
1987	125,397	286,480	7,579	2,840	280,495	97,828	102.1
1988	130,134	302,606	9,720	3,606	290,467	103,853	104.2
1989	131,807	317,379	7,487	2,480	302,226	113,999	105.0
1990	131,607	321,452	7,981	1,979	308,138	121,311	104.3
1991	131,466	322,503	10,158	1,986	314,585	121,057	102.5
1992	130,252	322,729	10,446	1,975	318,111	117,204	101.5
1993	129,069	323,159	11,402	6,488	321,759	113,690	100.4
1994	130,967	330,204	15,510	8,214	326,139	110,459	101.2
1995	132,010	339,083	14,475	6,143	331,269	109,941	102.4
1996	133,708	346,930	13,610	4,449	336,310	111,400	103.2
1997	135,469	353,698	20,757	11,134	336,189	119,286	105.2
1998	136,014	358,406	19,590	10,688	343,815	124,975	104.2
1999	138,700	370,982	16,971	5,768	351,080	133,674	105.7
2000	135,996	361,943	18,291	6,857	347,184	136,999	104.3
2001	135,239	362,233	21,739	8,445	361,428	124,510	100.2
2002	129,358	345,026	20,978	8,694	360,644	96,608	95.7
2003	134,353	358,337	20,100	8,185	362,522	80,508	98.8

표 3 세계 쌀 통계(북미)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884	3,066	1,461	114	1,619	641	189.4
1971	889	3,083	1,804	107	1,650	377	186.8
1972	901	3,108	1,726	92	1,684	167	184.6
1973	1,048	3,324	1,604	145	1,722	310	193.0
1974	1,197	3,992	2,194	86	1,877	317	212.7
1975	1,354	4,579	1,732	61	1,809	1,416	253.1
1976	1,149	4,081	2,100	70	2,013	1,454	202.7
1977	1,080	3,470	2,330	93	1,688	999	205.6
1978	1,327	4,546	2,431	105	2,157	1,062	210.8
1979	1,321	4,644	2,706	158	2,264	894	205.1
1980	1,470	5,098	3,028	246	2,582	628	197.4
1981	1,715	6,364	2,682	129	2,727	1,712	233.4
1982	1,490	5,288	2,219	120	2,538	2,363	208.4
1983	1,048	3,506	2,272	238	2,308	1,527	151.9
1984	1,254	4,673	1,960	362	2,444	2,158	191.2
1985	1,200	4,830	1,885	180	2,601	2,682	185.7
1986	1,080	4,658	2,719	168	3,023	1,766	154.1
1987	1,094	4,489	2,289	208	3,133	1,041	143.3
1988	1,294	5,452	2,786	425	3,194	938	170.7
1989	1,227	5,447	2,537	430	3,291	987	165.5
1990	1,217	5,298	2,331	515	3,610	859	146.8
1991	1,195	5,286	2,128	729	3,699	1,047	142.9
1992	1,337	5,904	2,515	654	3,672	1,418	160.8
1993	1,196	5,380	2,564	657	3,955	936	136.0
1994	1,433	6,905	3,322	718	4,113	1,124	167.9
1995	1,327	5,861	2,694	770	4,170	891	140.6
1996	1,215	5,720	2,488	853	4,028	948	142.0
1997	1,356	6,050	2,755	847	4,108	982	147.3
1998	1,418	6,111	2,734	894	4,439	814	137.7
1999	1,505	6,771	2,807	1,001	4,717	1,062	143.5
2000	1,309	6,156	2,594	1,010	4,588	1,046	134.2
2001	1,405	6,922	2,961	1,193	4,778	1,422	144.9
2002	1,355	6,611	3,704	1,185	4,796	718	137.8
2003	1,253	6,217	2,723	1,351	4,922	641	126.3

표 4 세계 쌀 통계(카리브해)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291	412	0	352	764	79	53.9
1971	286	428	0	323	738	92	58.0
1972	302	446	0	271	728	81	61.3
1973	361	486	0	391	877	81	55.4
1974	377	494	0	355	843	87	58.6
1975	336	558	0	317	853	109	65.4
1976	366	557	10	262	803	115	69.4
1977	387	585	0	307	889	118	65.8
1978	328	599	0	270	868	119	69.0
1979	319	604	0	232	882	73	68.5
1980	320	647	0	227	878	69	73.7
1981	328	652	0	336	958	99	68.1
1982	313	696	0	243	947	91	73.5
1983	336	762	0	122	865	110	88.1
1984	345	809	0	206	1,031	94	78.5
1985	329	726	0	229	978	71	74.2
1986	339	782	0	404	1,155	102	67.7
1987	325	668	0	346	1,003	113	66.6
1988	326	717	0	380	1,115	95	64.3
1989	322	748	0	493	1,227	109	61.0
1990	325	683	0	513	1,218	87	56.1
1991	317	666	0	477	1,148	82	58.0
1992	334	662	0	650	1,299	95	51.0
1993	250	506	0	489	1,018	72	49.7
1994	248	515	0	637	1,149	75	44.8
1995	229	495	0	709	1,212	67	40.8
1996	302	640	0	580	1,217	70	52.6
1997	302	638	0	725	1,332	101	47.9
1998	260	487	0	848	1,355	81	35.9
1999	249	580	0	853	1,414	100	41.0
2000	242	543	0	906	1,436	113	37.8
2001	249	606	0	953	1,514	158	40.0
2002	250	631	0	995	1,636	148	38.6
2003	250	635	0	1,045	1,643	185	38.6

표 5 세계 쌀 통계(중미)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192	227	11	56	267	32	85.0
1971	203	278	8	18	266	54	104.5
1972	206	257	8	8	279	32	92.1
1973	239	322	21	1	293	41	109.9
1974	266	326	6	15	317	59	102.8
1975	289	396	7	13	344	117	115.1
1976	242	309	35	8	351	48	88.0
1977	247	323	47	20	314	30	102.9
1978	255	376	62	29	316	57	119.0
1979	248	388	65	48	364	64	106.6
1980	266	368	38	47	385	56	95.6
1981	264	432	20	20	420	68	102.9
1982	269	378	10	45	434	47	87.1
1983	286	470	45	23	419	76	112.2
1984	262	450	18	13	416	105	108.2
1985	246	486	34	15	461	111	105.4
1986	220	416	20	58	492	73	84.6
1987	196	375	0	87	489	46	76.7
1988	189	376	0	93	458	57	82.1
1989	248	456	1	54	500	66	91.2
1990	244	466	0	66	517	81	90.1
1991	233	454	16	153	558	114	81.4
1992	221	437	7	100	555	89	78.7
1993	241	469	2	140	601	95	78.0
1994	250	477	31	171	629	83	75.8
1995	253	561	10	230	727	137	77.2
1996	273	540	19	232	753	137	71.7
1997	335	578	13	283	808	177	71.5
1998	268	521	10	234	779	143	66.9
1999	249	537	10	246	780	136	68.8
2000	265	607	10	316	849	200	71.5
2001	231	560	10	430	888	292	63.1
2002	220	534	10	434	949	301	56.3
2003	220	528	0	465	992	302	53.2

표 6 세계 쌀 통계(남미)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5,704	5,418	447	39	6,058	501	89.4
1971	5,762	5,954	193	35	5,335	962	111.6
1972	5,664	6,351	264	32	6,510	571	97.6
1973	5,405	6,445	327	57	6,266	480	102.9
1974	6,313	7,121	326	72	6,462	885	110.2
1975	7,159	8,396	637	122	7,046	1,720	119.2
1976	6,528	7,949	894	74	7,393	1,456	107.5
1977	6,399	7,698	533	111	7,675	1,057	100.3
1978	6,671	7,901	448	760	8,092	1,178	97.6
1979	7,744	9,615	450	423	8,719	2,047	110.3
1980	7,418	8,976	540	319	9,299	1,503	96.5
1981	7,361	9,549	553	308	9,194	1,613	103.9
1982	6,542	8,681	464	421	9,154	1,097	94.8
1983	6,666	9,217	503	241	9,129	923	101.0
1984	6,236	9,421	608	778	9,019	1,495	104.5
1985	7,031	10,014	597	1,313	9,506	2,719	105.3
1986	7,312	10,484	454	286	10,277	2,758	102.0
1987	7,353	11,491	477	101	10,193	3,680	112.7
1988	6,784	11,283	469	533	10,909	4,118	103.4
1989	5,636	8,694	477	720	10,787	2,268	80.6
1990	5,620	10,099	517	1,354	10,840	2,364	93.2
1991	6,147	10,672	863	942	11,004	2,111	97.0
1992	5,971	10,757	1,022	1,276	11,233	1,889	95.8
1993	6,011	11,357	906	1,388	11,373	2,355	99.9
1994	5,965	12,007	1,175	1,478	11,519	3,146	104.2
1995	5,603	11,338	1,359	1,448	11,567	3,006	98.0
1996	5,317	11,230	1,724	1,342	11,537	2,317	97.3
1997	4,757	10,337	1,684	1,960	11,619	1,311	89.0
1998	5,769	13,688	1,987	1,544	12,075	2,481	113.4
1999	5,584	13,617	1,629	940	12,360	3,049	110.2
2000	4,940	12,590	1,578	943	12,618	2,386	99.8
2001	4,979	12,650	1,050	1,018	12,799	2,205	98.8
2002	4,944	12,632	1,089	1,327	12,887	2,188	98.0
2003	5,003	12,574	1,115	1,245	12,949	1,943	97.1

표 7 세계 쌀 통계(유럽연합)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316	1,073	431	654	1,277	318	84.0
1971	313	1,076	575	739	1,328	230	81.0
1972	320	956	299	552	1,197	242	79.9
1973	324	1,205	327	558	1,298	380	92.8
1974	316	1,165	670	514	1,139	250	102.3
1975	296	1,143	319	507	1,250	331	91.4
1976	295	1,050	170	605	1,472	344	71.3
1977	317	902	632	1,073	1,377	310	65.5
1978	322	1,119	767	1,047	1,402	307	79.8
1979	312	1,259	429	470	1,367	240	92.1
1980	303	1,152	43	284	1,339	294	86.0
1981	284	1,069	774	1,159	1,377	371	77.6
1982	301	1,063	479	753	1,378	330	77.1
1983	273	951	560	928	1,365	284	69.7
1984	308	1,131	498	748	1,413	252	80.0
1985	318	1,323	481	697	1,469	322	90.1
1986	334	1,285	589	856	1,507	367	85.3
1987	329	1,289	523	749	1,487	395	86.7
1988	347	1,314	295	440	1,494	360	88.0
1989	331	1,386	286	471	1,540	391	90.0
1990	373	1,606	454	514	1,626	431	98.8
1991	367	1,487	436	441	1,590	333	93.5
1992	364	1,408	198	374	1,649	268	85.4
1993	351	1,310	91	414	1,663	238	78.8
1994	376	1,376	235	616	1,750	245	78.6
1995	373	1,305	321	819	1,647	401	79.2
1996	426	1,708	364	850	2,100	495	81.3
1997	424	1,778	369	861	2,080	685	85.5
1998	408	1,749	363	863	2,113	821	82.8
1999	397	1,751	363	869	2,190	888	80.0
2000	399	1,566	285	926	2,207	888	71.0
2001	396	1,624	335	918	2,215	880	73.3
2002	397	1,706	485	885	2,225	761	76.7
2003	400	1,625	450	900	2,230	606	72.9

표 8 세계 쌀 통계(동부유럽)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76	133	6	172	317	33	42.0
1971	79	151	5	131	278	32	54.3
1972	77	117	6	163	273	33	42.9
1973	73	136	2	159	282	44	48.2
1974	75	126	1	149	283	35	44.5
1975	74	154	0	172	337	24	45.7
1976	74	85	0	223	261	71	32.6
1977	73	120	0	163	309	45	38.8
1978	71	112	0	182	289	50	38.8
1979	67	133	0	206	350	39	38.0
1980	61	109	5	206	316	33	34.5
1981	58	130	0	171	271	63	48.0
1982	59	135	0	116	265	33	50.9
1983	66	158	0	136	317	10	49.8
1984	71	163	0	164	337	0	48.4
1985	75	178	0	114	292	0	61.0
1986	85	224	0	159	383	0	58.5
1987	88	209	0	121	330	0	63.3
1988	86	207	0	123	330	0	62.7
1989	81	108	0	141	249	0	43.4
1990	72	106	1	140	245	0	43.3
1991	39	55	1	173	227	0	24.2
1992	35	62	1	237	298	0	20.8
1993	30	50	9	257	298	0	16.8
1994	26	48	5	269	312	0	15.4
1995	19	44	16	297	325	0	13.5
1996	24	45	9	370	406	0	11.1
1997	25	35	8	336	363	0	9.6
1998	23	33	3	372	402	0	8.2
1999	23	35	1	346	380	0	9.2
2000	23	35	1	393	427	0	8.2
2001	23	35	1	363	397	0	8.8
2002	23	35	1	363	397	0	8.8
2003	23	35	1	352	386	0	9.1

표 9 세계 쌀 통계(구 소련)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350	747	74	332	1,005	0	74.3
1971	390	834	153	280	961	0	86.8
1972	421	961	113	154	1,002	0	95.9
1973	462	1,030	233	194	991	0	103.9
1974	495	1,117	70	279	1,326	0	84.2
1975	500	1,173	127	324	1,370	0	85.6
1976	522	1,168	94	460	1,534	0	76.1
1977	548	1,294	120	414	1,588	0	81.5
1978	580	1,232	274	631	1,589	0	77.5
1979	610	1,395	213	694	1,876	0	74.4
1980	666	1,629	126	1,283	2,786	0	58.5
1981	634	1,453	100	859	2,212	0	65.7
1982	648	1,442	100	323	1,665	0	86.6
1983	700	1,518	100	150	1,568	0	96.8
1984	688	1,588	83	127	1,632	0	97.3
1985	671	1,500	69	363	1,794	0	83.6
1986	621	1,537	241	488	1,784	0	86.2
1987	657	1,579	166	473	1,886	0	83.7
1988	671	1,689	150	587	2,126	0	79.4
1989	656	1,464	150	390	1,704	0	85.9
1990	612	1,406	150	384	1,640	0	85.7
1991	598	1,295	30	720	1,985	0	65.2
1992	634	1,261	25	228	1,464	0	86.1
1993	630	1,180	110	105	1,175	0	100.4
1994	538	972	142	233	1,063	0	91.4
1995	505	759	48	534	1,130	115	67.2
1996	515	812	24	390	1,118	175	72.6
1997	440	717	40	326	1,130	48	63.5
1998	433	735	46	707	1,155	289	63.6
1999	474	766	35	507	1,199	328	63.9
2000	353	708	20	479	1,199	296	59.0
2001	298	624	16	624	1,189	339	52.5
2002	335	679	30	616	1,331	273	51.0
2003	342	702	20	623	1,340	238	52.4

표 10 세계 쌀 통계(아프리카)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3,635	4,725	577	876	4,983	111	94.8
1971	3,669	4,897	511	833	5,233	97	93.6
1972	3,631	4,592	320	969	5,199	139	88.3
1973	3,773	4,431	153	1,038	5,303	152	83.6
1974	4,010	4,629	119	747	5,211	198	88.8
1975	4,336	5,047	230	838	5,586	267	90.4
1976	4,244	5,120	264	1,225	6,062	286	84.5
1977	4,316	5,226	167	1,952	6,885	412	75.9
1978	4,408	5,070	105	2,519	7,258	638	69.9
1979	4,331	5,222	192	2,034	7,342	353	71.1
1980	4,437	5,113	156	2,393	7,339	362	69.7
1981	4,419	5,114	35	2,834	7,822	441	65.4
1982	4,499	5,419	35	2,609	8,057	377	67.3
1983	4,528	5,405	75	3,063	8,490	280	63.7
1984	4,776	5,359	16	2,934	8,339	218	64.3
1985	4,818	5,667	92	2,663	8,222	234	68.9
1986	5,123	6,169	105	2,668	8,639	327	71.4
1987	5,205	6,474	108	3,061	8,759	995	73.9
1988	5,615	6,574	32	2,680	8,965	1,252	73.3
1989	6,252	7,332	85	2,541	9,201	1,839	79.7
1990	5,638	7,532	159	2,670	9,897	1,985	76.1
1991	5,988	8,108	209	2,810	10,388	2,306	78.1
1992	6,032	8,175	135	3,559	11,283	2,622	72.5
1993	6,045	8,476	268	3,302	11,432	2,700	74.1
1994	6,193	8,158	163	3,065	11,570	2,190	70.5
1995	6,215	8,551	345	3,370	11,907	1,859	71.8
1996	6,508	9,540	204	3,503	12,683	2,015	75.2
1997	6,632	9,858	435	4,342	13,309	2,471	74.1
1998	6,487	9,202	334	4,586	13,710	2,215	67.1
1999	6,573	10,733	518	5,087	14,688	2,829	73.1
2000	6,627	10,746	715	5,715	15,292	3,283	70.3
2001	6,798	10,615	484	7,073	16,282	4,205	65.2
2002	6,738	10,953	611	7,049	17,244	4,352	63.5
2003	6,816	11,005	710	6,005	17,328	3,324	63.5

표 11 세계 쌀 통계(중등)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528	986	11	604	1,538	101	64.1
1971	505	1,078	16	583	1,634	112	66.0
1972	466	1,101	21	619	1,615	196	68.2
1973	450	1,154	7	877	1,917	303	60.2
1974	423	1,074	4	1,198	2,075	496	51.8
1975	427	996	10	1,041	2,141	382	46.5
1976	475	1,120	24	1,555	2,408	625	46.5
1977	448	1,239	17	1,151	2,383	615	52.0
1978	441	1,152	18	1,600	2,852	497	40.4
1979	525	1,163	14	1,816	2,881	581	40.4
1980	564	1,248	28	1,835	2,976	604	41.9
1981	596	1,405	0	1,887	3,221	675	43.6
1982	621	1,390	19	2,029	3,313	762	42.0
1983	549	1,075	0	2,338	3,639	536	29.5
1984	546	1,231	0	2,275	3,522	520	35.0
1985	601	1,446	1	2,002	3,499	468	41.3
1986	592	1,449	2	2,857	3,854	918	37.6
1987	662	1,483	0	2,175	3,834	742	38.7
1988	589	1,206	63	2,528	3,771	642	32.0
1989	668	1,530	0	2,600	4,087	685	37.4
1990	644	1,613	3	2,133	4,068	360	39.7
1991	711	1,676	5	3,273	4,460	844	37.6
1992	760	1,765	2	3,618	4,792	1,433	36.8
1993	755	1,983	5	2,637	4,693	1,355	42.3
1994	769	1,905	10	3,739	4,741	2,248	40.2
1995	815	1,985	2	3,555	4,859	2,927	40.9
1996	810	2,040	11	4,032	5,547	3,441	36.8
1997	771	1,953	48	3,082	5,418	3,010	36.0
1998	805	2,240	28	4,073	5,865	3,430	38.2
1999	790	1,905	30	4,257	6,091	3,471	31.3
2000	670	1,582	56	3,781	6,406	2,372	24.7
2001	685	1,632	55	4,417	6,665	1,701	24.5
2002	780	2,114	60	4,020	6,790	985	31.1
2003	740	1,860	60	4,765	6,860	690	27.1

표 12 세계 쌀 통계(오세아니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970	38	214	171	44	116	59	184.5
1971	41	177	150	46	113	19	156.6
1972	45	221	154	49	129	6	171.3
1973	68	293	163	62	154	44	190.3
1974	76	277	196	42	79	88	350.6
1975	75	298	297	56	110	35	270.9
1976	92	379	256	60	115	103	329.6
1977	91	351	253	61	118	144	297.5
1978	110	495	426	76	135	154	366.7
1979	116	438	294	83	144	237	304.2
1980	104	521	468	92	156	226	334.0
1981	123	611	573	105	170	199	359.4
1982	85	392	251	111	179	272	219.0
1983	119	452	327	106	176	327	256.8
1984	126	618	463	119	184	417	335.9
1985	107	491	390	120	185	453	265.4
1986	96	393	375	205	276	400	142.4
1987	107	540	430	137	237	410	227.8
1988	98	576	500	156	292	350	197.3
1989	105	605	461	159	303	350	199.7
1990	89	563	519	208	392	210	143.6
1991	127	806	607	181	400	190	201.5
1992	125	683	525	179	417	110	163.8
1993	132	774	500	168	402	150	192.5
1994	128	813	500	166	429	200	189.5
1995	137	691	550	196	462	75	149.6
1996	152	894	657	237	507	42	176.3
1997	147	947	537	288	563	177	168.2
1998	148	974	662	326	608	207	160.2
1999	133	787	610	371	670	85	117.5
2000	186	1,258	617	415	706	435	178.2
2001	150	912	375	207	528	651	172.7
2002	38	280	350	200	530	251	52.8
2003	60	358	200	135	455	89	78.7

자료: <http://www.worldfood.muses.tottori-u.ac.jp>에서
(김혜영 hykim@krei.re.kr 02-3299-4269 농산업경제연구센터)

M45-35 세계농업뉴스 제35호 (2003. 7)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3년 7월

발 행 2003년 7월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